

학생인권포럼 토론문

손 두 현(민주노총포항시협의회)

아이들은 어른들을 그대로 보고 자란다고 하는데요. 요즈음 어른들 특히 국가의 내로라하는 어른들이 하는 냥을 보면 한심함을 넘어 환장할 지경인데요. 오늘 다룬 인권의 문제는 심각하다 못해 무감각하기까지 할 정도로 이명박 정부는 폭력을 더욱 제도적으로 정당화하려 하고 있고, 시민들은 촛불이 꺼지자 또다시 일상의 바쁨 속에 무관심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인권에 대한 정의를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기업, 학교, 군대, 교도소 등등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은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재작년에 교도소장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교도소 소장이 하는 말이 지금은 교도관의 인권을 이야기해야 할 정도로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짐승들만 살았습니까? 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은 학교 정문을 넘지 못한다고들 많이들 이야기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인권 역시 공장 담벼락을 넘지 못하고 다만 그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민주노총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고민이 참으로 부족하여 논하는 것이 난감합니다만 노동인권 또한 매우 중요한 인권이라 노동인권을 반추해서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85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노동자들과 약 40만명을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권은 생존권입니다. 법률에는 엄연히 이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시급 3770원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150만명에 달하고, 월차휴가 사용하겠다고 하자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온 몸을 구타하고, 노동의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정규직을 대신해서 짤리고,

억울해서 못나간다고 하니 cctv로 감시하고, 왕따시키고, 온갖 욕설과 언어폭력을 일삼아 신경정신과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비정규직의 일상이 돼버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80년 후반 3D업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외국 인력을 도입하여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양산해 놓고 얼마 전 경기도 마석공단에 체류기한을 넘긴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돼지 몰듯이 가두어 놓고 뚜드려 잡는 인간사냥을 해서 수많은 이들이 부상당한 채 감금당하고 자국으로 쫓겨 가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땀흘려 노동하는 이들에게 인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시민사회가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비정규노동자 본인들이 인권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어릴 때부터 차별은 당연해, 폭력도 있을 수 있어, 본래 세상이 그런 것이야 하고 그렇게 길들여져 오지 않았는가하는 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어른들이 학생시절에 인권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기성 사회에 편입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인권에 대한 소중함을 배우고, 공유하면서 또 그러한 교육환경에서 자라 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들의 인권은 어떠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 획기적으로 변했다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너무도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고, 전교조경북지부의 학생인권실태조사에서 소상히 밝혀 따로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2006년도 전교조에서 수도권 중고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생들간의 폭력, 집단 괴롭힘보다 교사들에 의한 학생인권침해를 더욱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권침해의 내용 가운데 공부를 못한다고 무시할 때 > 체벌 시 학생 의견을 듣지 않을 때 > 학생의 건의를 교사가 묵살할 때 > 두발에 대한 제재 > 교사에 의한 심한 체벌 등 1~5위가 교사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친구사이의 폭력과 따돌림은 그 다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러한가에 대하여 저희가 교육주체 아니라는 점에서 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누구보다 학부모의 처지에서 또는 교육운동을 지지·연대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않을 까 합니다.

여하튼 이처럼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폭력이 일상화되는데 대한 책임이 교사에게 전혀 없다고만 할 수는 없을거라 봅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정부나 사회에서 학생의 인권침해의 주요 원인을 교사들에게만 온전히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현상들이 일부 능력이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

는 등 나태한 교사들(정부와 수구세력들은 전교조 교사들이라 몰아붙이고 있지요)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에 반해 선생님들은 정부의 이러한 책임 전가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에서 안타까움이 밀려옵니다.

더욱이 기업하고 친구하기, 입시경쟁에만 열을 올려 학교를 학원화 하려는 이명박 정부는 이의 해결책으로 아니 이를 빌미삼아 교원평가를 무기로 들고 나와 교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의도된 교원평가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는 못한 듯합니다. 서열화에 앞장서는 잘못된 교육/교원정책이 버젓이 활개치고 있는 한 교원평가는 또 다른 인권침해이자 전교조 죽이기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교원평가반대투쟁이 '자기 밥그릇 지키기'라는 인상을 자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학생들의 인권이 학교 담장 안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누려지는 것은 있는 규범을 제대로 지키면 됩니다. 주무 행정기관은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상벌을 제대로 활용하는 길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보면 1)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2)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부 간에 협의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정례화 시키고, 여기에 전교조가 앞장서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교육과정에 사람이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이 당연히 누리고 알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 보다 비중 있게 할애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교육을 행한다면 이 또한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발제문 2]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에 나서자!

김 용 식(진보신당 경북도당(준))

1. 아동·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제안하며

우리 사회는 군부독재 시절을 지나 절차적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시민권적 일반으로서의 인권과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환경의 변화를 맞았다. 하지만, 사회권적 인권환경은 7,80년대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아동·학생의 인권상황은 역시 제자리를 걸음을 하고 있다.

일부 학교의 경우 최소한의 휴식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교직이란 이름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그대로 둔채 학생들의 개성을 억누르고 있다. 아동·학생의 표현의 자유는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경쟁적 교육환경에 내몰리면서 인성의 문제가 실종되고 있다.

이번 학생인권 포럼을 준비하면서, 기획단위에서 발제를 요청하면서 보내온 내용이 이번 학생인권 포럼의 출발지점이 어디이고 지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기획단위에서 보내온 내용을 소개 하면,

▷ 교육양극화와 경쟁교육의 최대 피해자는 학생 ▷ 학교가 통제적 구조이며 경쟁을 통하여 교육주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책 추진 ▷ 교육운동에 있어서 주체의 자기결정권과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은 가장 중요한 운동의 원천 ▷ 올 하반기 (논란의 중심인) 일제고사, 국제중, 자율형사립고 등 차별과 수월성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권 쟁취는 가장 중요한 교육운동의 지점 ▷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학생인권에 대한 소통의 장 마련 ▷ 교육정책 토론회가 문제점을 열거하는 식의 토론으로만 흐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실천 방안에 대한 고민까지 이어져야 함 ▷ 한축으로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현 상황을 진단하고, ▷ 또 한 축은 학생인권에 대한 초중등교육법에 기반하여 직접 부대끼는 학교에서 학생인권의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실천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것 ▷ 토론의 마지막으로는 실천에 대한 결의를 해 내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아동·학생의 인권문제는 학교의 문제로만 국한 되지 않는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동·학생들은 유해환경과 장시간 노동,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가정에서도 부모와 아동간의 관계가 평등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관계로 설정 지어져 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사회의 공동체성이 붕괴하면서 많은 아동들이 방치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여러 측면에서 변화해야 할 지점이 많으나 아동·학생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에 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아동·학생은 '사람'이며, 분명히 인권의 주체라는 점과 사회권 인권의 문제와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아동·학생인권 조례의 준거 -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의 문제가 조례제정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다만, 경북의 교육주체들이 매년 개최하는 정례적인 행사가 아닌 실천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이란 수단을 제안한 것이다.

학생인권 조례제정 운동이 우리 경북의 교육주체들이 지역 차원에서 아동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학생인권 조례 제정의 준거가 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이하 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협약은 전문과 5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40개 조항이 아동의 권리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나머지 조항들은 당사국의 협약비준과 이행 조치들에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약은 적용 대상을 18세 미만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무차별의 원칙으로 아동의 권리는 인종, 국적, 종교를 초월하여 적용되며, 아동 최선의 이익우선 원칙으로 모든 조치, 정책들은 어린이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된다는 기본원칙을 전제로 아동이 생존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발달할 권리, 참여할 권리의 4가지 기본권리를 누려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에는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생명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결사·평화적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보호, 정보 접근권, 휴식권 등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협약은 아동들에 대한 인권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아동들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존중되는 생명과 신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생존권(제6조), 학대나 폭력,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19조)를 갖고 있다. 또한 권리조약은 아동이 고문이나 잔혹한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하며, 아이들이 범하는 죄에 대하여 사형이나 종신형 같은 처벌을 피하고, 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아동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는 권리(제12조), 표현의 자유(제13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제14조), 결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제15조)를 갖고 있다. 또한 아동은 사생활이나 명예를 보호받으며, 외부로부터의 위협이나 간섭, 비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아동에게 자신의 복지와 건강향상을 위한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제17조).

셋째, 아동은 고유한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갖고 있다. 출생과 함께 이름을 갖고 국적을 취득할 권리(제7조),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권리(제8조), 인종, 언어, 종교적 소수집단에 소속된 아이는 고유한 문화와 종교를 누릴 권리(제30조),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적합한 놀이와 오락을 하며, 문화예술 생활에 참여할 권리(제31조)를 가진다.

넷째, 아동은 양육 받고 보호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가능한 최대 한도로 생존과 발달을 보장받아야 하고(제6조), 건강하게 태어나서 충분한 영양상태를 유지하며 깨끗한 위생환경 속에서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누리고 살며 질병치료와 회복에 최우선적인 배려를 받을 권리(제24조)를 가지며,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나 상해, 학대, 방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성적착취나 학대, 유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33조에서 제35조). 또한 아동은 부모에 의해 양육받을 권리를 가지며(제7조), 가족환경을 잃어버린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히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제20조).

다섯째,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교육의 기본목적은 아동의 인격과 재능,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평화, 관용, 평등, 우정 등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살도록 준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제29조). 그리고 교육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규율도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제28조).

대한민국은 1991년 가입했는데, 헌법은 제6조 제1항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아동권리 협약을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²²⁾함으로써, 이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되었다.

22) 다만, 우리나라는 제9조 제3항, 제21조 가항 및 제40조 제2항 나호 (5)의 규정을 유보하면서 비준하

하지만, 현재가지도 우리 사회에는 협약의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정신은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2003년 1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한 국정부에 대해 권고문을 발표했는데, 권고문에서는 ▷ 모든 아동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책임을 지는 상설적인 기구를 구성할 것 ▷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권에 관한 소 위원회를 설립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에 적어도 한명의 아동권 전문가를 둘 것 * 경 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속한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예산을 우선배정할 것 ▷ 한부모 가정 아동, 혼외출생아동, 장애아동, 이주노동자의 자녀, 여아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를 취할 것 ▷ 아동의 표현의 자유와 아동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학생의 표현·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육부 지침, 학교 교칙을 개정할 것 ▷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할 것 ▷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장애아동의 공공영역, 공공건물에 대한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 고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정부의 보고서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등 관련문서를 널리 배포하고 전체 대중뿐 아니라 아동이 알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는 현재 한국의 아동·학생 인권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서 아동·학생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준 단적인 사례에 불과 하다.

이와 같이 협약의 정신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데에는 우선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큰데, 중앙정부는 조약에 가입한 후 일부 법제도를 손질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 실질적인 개선 노력은 거의 하지 않았다.

늦어지면 이제라도 우리 교육주체 스스로가 조약의 내용을 널리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할 때이다.

3. 지역차원의 아동·학생 인권실현의 방안

우리사회에서 지역차원에서 아동인권의 문제를 다른 곳은 많지만,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 한 곳은 몇몇 곳이 되지 않는다.

2003년도 경기도 군포시가 ‘청소년인권도시선언’을 했고, 경기도 부천시가 푸른부천 21 실천협의회 차원에서 ‘아동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며, 광주광역시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였다.

시의원, 교육위원이 공동으로 ‘아동인권조례제정’을 추진한 사례와 전북 군산시와 부산광역시 등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의 조례제정 운동은 이제 제안하는 단계로써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은다고 해도, 매우 보수적인 지역적 정서 속에서는 더욱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교육기본법 제12조에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라는 명문화 되어 있으며, 아동·학생의 인권이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규범적 근거는 산재 해 있다. 하지만, 규범은 규범일뿐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을 지역사회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제정을 제안하며, 단순히 조례를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라는 절차에 주목하지 않고 아동·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차원의 운동을 해나가자 취지로 조례제정을 제안했다는 점을 앞서 밝힌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할 수 있는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²³⁾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운동적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지역차원에서 아동·학생 인권조례 제정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인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공동체 문제를 접근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제도는 지방자치와 함께 지방교육자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논의하는 범위역시 행정구역이라는 틀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 지역적 범위의 영향 속에서 논의하고 있듯이 우리의 운동의 대상과 범위를 지역으로 두고자 하며, 실천적 의미 있다고 본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범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규범, 보다 가까운 규범, 보다 구체 성 있는 규범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동·학생인권과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한다면 아동·학생에게 보다 가까운 법규법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지역적인 특성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례제정 자체를 통해, 아동·학생인권에 대한 홍보와 시민 교육적 효과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지방교육자치의 영역에서 제정되는 조례로써,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의 상위법규정과 정신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실현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23)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생의 인권이 실제로 위협받거나 침해당하였을 경우 침해의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며, 아동·학생의 참여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아동·학생들이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4. 아동·학생 인권조례에 담겨야 할 내용

1) 기본방향

▷ 인권교육과 지원

유엔아동권리 협약에 대한 교육의 실시인데, 권리협약이 만들어져도 그런 사실 자체를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따라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 교육한다면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인권 교육의 대상은 어른들(교사, 학부모)과 아동·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인권교육이 교사 양성 과정과 재교육과정에서 필수과정이 되도록 하고, 인권교육 관련 내용이 교사들에게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권교육을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도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의 인권에 대해 자각하고, 이를 통해 다른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체득하게 될 것이다.

▷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와 인권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지역의 아동·학생들의 인권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하여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조사가 학교, 지역사회, 가정의 3공간에서 아동·학생들이 겪고 있는 인권실태에 대한 것이 됨으로써, 아동·학생들이 받고 있는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드러날 것이며, 그 원인의 진단도 용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시 환류되어 인권교육을 보다 내실있게 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 지역차원의 아동·학생인권 지원 네트워크의 구성

학교, 종교, 시민사회 단체, 공공기관(도청, 교육청, 시, 군, 청소년 관련시설, 동소무소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을 지원하고, 아동·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를 모니터하고 인권침해를 겪은 아동·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 차원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인권 문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의 체계가 마련될 것이다.

▷ 아동·학생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기구 설치

인권침해문제의 경우에는 단순한 상담기능 뿐만 아니라,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현재는 이를 해결할 주체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전문가, 청소년전문가, 법률전문가, 부모들을 참여시켜 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

▷ 교직, 학교운영에서 학생의 참여와 인권존중 원칙 반영

조례를 통해 인권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교직이나 학교운영이 조례에서 제시한 인권기준에 부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교직의 제·개정시 학생참여를 보장하고, 학생회의 자치활동을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단위를 넘어선 지방자치단체 단위에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회의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지점으로 보이며, 이러한 기구들을 통해 지역차원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조례 내용 - 광주광역시 추진 사례

'광주광역시는 학생 권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는데,

제1장 총칙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및 학교 등과 교사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학생인권 보장과 신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학생을 인격적 주체로서 권리를 인정하고, 수업받을 권리, 선택의 권리,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3장은 자치에 관한 권리 를 제시하고 있다.

제4장은 문화 및 복지에 관한 권리로 학생문화 활동을 권리로서 보장하는 등 문화와 학생 복지에 관한 권리를 밝히고 있으며, 제5장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누릴 권리로 학칙 및 제규정으로 학생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수 없고, 학생관련 규정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제6장은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등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제7장은 의사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집회, 결사의 권리, 교외활동에 참여할 권리,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기술하고 있다.

제8장에는 학생인권보호기구 설치 및 인권교육·연수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에는 학교는 조례에 맞추어 제규정을 제·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 추진된 학생인권조례(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다, 다만 아쉬운 점이 발견된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도 교육감 등 조례 공포의 주체들에게 인권조사와 인권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사업이 교육에 반영되고 이를 토대로 기존 정책을 보완하도록 하는 환류시스템을 제도화 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자원의 네트워크 구성과 제도적 지원 등이 담겨 있지 않다.

하지만, 이는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안)의 구성과 기술 방식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들며, 향후 우리가 제정을 추진하게될 조례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보완 되기를 희망한다.

5. 아동·학생인권 조례제정 운동 이렇게 하자!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우리 교육본 상에는 제12조에 학습자의 인권의 문제가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하고 있고, 2항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3항은 '학생은 학교의 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서 확인되듯, 학생인권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하는 제도적 방안은 규정하지 않는 형식적 규범에 머무르고 있으면서도, 3항과 같이 학습자의 의무는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등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 주고 있다.

따라서 조례제정 운동역시 선언적, 형식적 권리에 머무르고 있는 아동·학생 인권에 대한 권리를 실체적 권리로 만들어 내기 위한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몇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해해보자 한다.

우선 조례제정을 위한 방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경상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²⁴⁾ 연서할 주민의 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주민의 100분의 1 이상을 연서명 받아 주민발의로 청구하는 방안이 있다.

만약 우리가 주민발의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면, 2008년도 6월기준 경상북도 전체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2,710,961명(남: 1,364,999, 여: 1,345,962)이고,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만으로 추정할 경우 2,675,176명(남: 1,343,750, 여: 1,331,426)으로, 만 19세이상 인구는 2,107,414명이 된다. 2008년도 6월말을 기준으로 볼 경우 주민발의로 조례 제정을 추진

24) 경상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연서할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내 주민이 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때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19세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08.1.10〉

하기 위해서는 연서를 받아야할 주민의 수가 만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므로, 만19세 미만의 인구수가 2,107,414명이므로 산술적으로는 21,715명이상이면 된다.

또다른 방법은 의원 발의²⁵⁾로 하는 경우인데,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제20조 의안의 제출 및 발의 규정에 따라 55명의 의원 중 10인 이상의 연서를 통해 발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형식적인 절차를 서술한 것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의원발의로 추진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통해 그 서명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발의 단계에서는 의원연서명을 통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어느 방법으로 추진하더라도, 아동·학생 인권의 실태를 널리 알리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서로 확인하고 끊임없이 인권의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해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서두에서도 밝혔듯 인권은 제도의 개선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제도의 개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와 교사, 학부모, 아동 모두가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번 조례제정운동이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자각하고 인권의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 아동·학생인권 조례제정 운동에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25) 경상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도지사 교육감·위원회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광주광역시 학생 권리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권리에 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직속기관(이하 교육청) 및 학교 등(이하 학교)과 교직원 등(이하 교사)의 책무와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인권 보장과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된 각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 ① 학교는 초·중등 교육법 제 2조 2,3,4,5,6항에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
- ② 학생은 1호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 ③ 교사는 초·중등 교육법 제19조와 제22조에 규정된 모든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교육청은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시책을 통하여 학생 권리의 보장과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와 교사는 1항의 교육청 시책에 협력하고 당해 시설 내에서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청과 교육감은 학생의 권리가 폭넓게 보장되도록 광주광역시 및 구·군 행정기관, 유관기관, 공공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하고 공동 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들이 성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학교와 교사를 지원·지도 한다.

제2장 교육받을 권리

제4조(주체로서의 권리) 학생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본권에 의거 교수·학습 과정에서 인격적 주체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수업받을 권리) ① 학생은 법률과 학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업 참여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② 학교는 교육과정의 변칙적 운영이나 임의적 교내외 행사 등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③ 학교는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제6조(선택의 권리) ① 학생은 보충 학습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를 가지며, 자기 판단에 따라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재량활동이나 선택과목 등에서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도움을 받을 권리) 학생은 학습 과정이나 학교 생활에서 학교나 교사에게 도움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학교나 교사는 학생의 요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장 자치에 관한 권리

제8조(자치활동) 학생은 자치활동을 위한 조직·기구를 자유롭게 구성하고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제9조(학생회 구성 및 운영) ① 학생은 자율적으로 학생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권리 를 가진다.
② 학교는 징계나 성적으로 인한 자격제한 등 자치활동에의 자유로운 참여를 침해하는 학생회 제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③ 학교는 자치활동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자율적인 운영과 집행을 보장한다.
④ 학교는 학생회의 자문이나 지도의 요청시 도와주어야 하며, 학생회 결정이나 자 치활동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⑤ 학교에서는 자치활동을 위한 공간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집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동아리 조직 및 계발활동) ① 학생은 희망하는 동아리 조직이나 계발활동을 제한당하지 아니한다.
② 학교는 동아리 및 계발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 편성, 유휴 시설 우선 배정, 강사지원 등에 관한 학생의 요구를 최대한 존중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

여야 한다.

제11조(학교운영에 관한 권리) ①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 참관이 보장되며, 필요시 정해진 절차에 의거 발언할 수 있다.

② 학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해서 학생의 의견수렴과정을 제도화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대표의 발언권을 보장해야 한다.

①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의 교외활동

② 교복, 앨범, 체육복 등의 학생용품 선정

③ 보충 자율학습의 실시 등 학생의 수업 선택권과 관련한 안건

④ 학생생활규정 등 학생 관련 교칙의 제·개정에 관한 안건

③ 학교는 다양한 건의통로를 마련하고, 학생의 의견수렴을 위해 토론회나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며 그 과정과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제4장 문화 및 복지에 관한 권리

제12조(학생문화활동) ① 학생은 자유로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문화활동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자율적 운영과 집행을 보장한다.

제13조(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용) 학교는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양교육, 초청강연, 공연, 전시 등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해야 한다.

제14조(학교 축제) 학교 축제는 학생회 주도로 매년 실시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15조(학생 복지) ① 학생은 학교에서 성별, 성적,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등과 관계없이 최선의 복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청은 학교에 학생복지를 담당할 전문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③ 학교는 소외 계층을 위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교육청은 이를 지원한다.

④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의 교직원 화장실 청소 등 불필요한 노동을 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16조(편의시설)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학생용 시설·설비 및 편의를 위한 물품

을 확보해야 한다.

① 실내 휴게시설

② 정수기

③ 개인 사물함

④ 휴지 및 편의물품

② 교육청은 학교 신설시 1항에 규정된 시설·설비를 해야 한다.

③ 학교는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7조(건강권) ① 학교는 학생이 정기적인 건강 검진 및 건강 교육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학교는 여학생의 월경으로 인한 공결을 인정하고, 생리대 판매대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8조(학생의 날) 학교는 11월 3일 학생의 날을 기념하여 학생회 자율로 다양한 행사나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5장 적법한 절차를 누릴 권리

제19조(적법절차) 학생은 헌법 제12조 1항에 의거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20조(학칙 및 제 규정) ① 학교의 제 규정은 학생의 사생활 및 인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학생은 학생관련 제 규정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학교의 제 규정은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서술되어야 하고, 또한 학생을 잠재적 징계대상자(비행행위자)로 간주하는 표현을 쓰지 아니한다.

③ 학교의 제 규정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체벌을 포함한 신체적 폭력 및 인격모독 등의 심리적 폭력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④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수렴절차를 제도화하고 학생자치기구의 개정발의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21조(절차적 적법절차) ① 학교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할 수 있으며, 이 권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학생에게 전달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징계는 공정한 심의기구 구성을 통한 심의,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청문(학생, 학부모)의 기회보장, 불복에 따른 재심 요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실체적 적법절차) 징계의 기준과 사유는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학생을 징계에 회부할 때는 그 사유가 징계규정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제6장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제23조(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학생은 가족, 가정, 교우관계, 성적 등의 사생활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그 비밀은 보호받아야 한다.

제24조(개인 물품에 관한 권리) 학교와 교사는 학생이 동의하지 않는 소지품 검사 및 몰수를 할 수 없으며,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의 사적 기록물을 열람하지 아니한다.

제25조(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교와 교사는 학생 개인의 정보 수집 · 처리 · 보관에 있어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야 하며, 본인 혹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학생 개인의 정보는 수집 당시에 공지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③ 학생의 부모 혹은 보호자는 자녀의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으며, 부정확한 내용이나 잘못 기입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내용, 학생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학생은 민 · 형사상의 법적 진술이 강제되는 경우 이외의 사적인 일에 대한 진술 및 기록을 거부할 수 있다.

제26조(정보 · 통신의 권리) 학생의 정보 · 통신에 관한 권리는 수업이나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

제27조(모욕당하지 않을 권리) ① 교사는 순화된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언사를 하지 아니한다.

② 학교와 교사는 학생에게 타인의 사생활이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진술을

강요하지 아니한다.

제28조(교제와 종교선택의 자유) 학교는 학생 간의 교제나 종교의 선택에 있어서 학생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장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제29조(의사 표현의 자유) 학생은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부당하고 임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30조(집회 · 결사의 권리) 학생의 집회 및 결사는 학사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제31조(언론 · 출판의 권리) 학교는 학생신문이나 방송, 교지 등 학생 언론이나 출판 등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2조(교외활동에 참여할 권리) 학생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교외 문화행사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33조(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 학교와 교육청은 적법한 절차없이 학생의 게시글을 삭제하지 아니한다.

제8장 학생인권보호기구 설치 및 인권교육·연수

제34조(학교의 인권보호기구 설치)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 보호와 그 침해의 예방, 치유를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로 구성되는 교내 학생인권보호기구를 설치 · 운영해야 한다.

② ①항의 기구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교육청의 인권보호기구 설치) 교육청은 학생의 인권 보호와 그 침해를 예방 · 치유하기 위해 교육주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생인권보호기구를 설치 · 운영해야

하며, 그 역할과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성 : 교육청 교육국장, 중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교육위원회 1~2인, 교사 2~3인, 학부모 2~3인, 법률전문가 2인, 인권전문가 2인 기타 시민단체 대표 등 15인 내외로 한다.

2. 역할 : 1) 각종 정책이나 시책, 교육 과정상의 인권보호 및 침해 예방 활동
2) 학생 인권을 보호·신장하는 정책 연구·개발 및 건의
3) 학생 인권 침해 사례나 분쟁에 관한 조정
4) 본 조례안 및 각종 학생인권관련 규정의 해석
5) 기타 학생 인권 보호 및 신장과 관련한 활동

3. 기타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학교 내 인권교육 · 연수) 학교는 학기당 1시간 이상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학생교육과 교사 연수를 연간 계획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학생교육의 내용은 학생회와 사전 협의한다.

제37조(교육청 인권 연수 및 지원) 교육청은 모든 직무 연수 시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연수를 1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학교의 학생교육과 교사 연수를 위한 개발 및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의 장은 사설교육기관이나 수련원 등에 학생을 위탁하여 교육할 시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학교는 이 조례안에 맞추어 제 규정을 2006년 8월 말까지 제·개정하여야 한다.

* 이 조례(안)은 의견을 들어 수정, 보완 중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나]

일본 가와사키시 조례

1. 조례 내용

일본의 가나가와현 가와사키 시에서는 2000년 12월 21일 「가와사키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와사키시의 조례는 일본의 다른 아동권 관련 조례에 비해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²⁶⁾

가와사키시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를 만든 이유는 몇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우선 국제조약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도시에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국제조약의 정신을 좀 더 구체화하고, 지역 주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국제조약에서는 원칙밖에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권구제 절차 같은 것은 조약에 나오지 않는데, 조례로서 그것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와사키 시 조례에서는 '인권옴부즈맨'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아동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상담, 조사, 사후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로 아동에게도 참가의 기회, 자기결정의 기회를 보장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아동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게 한다든지, 아동 회의를 설치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아동에게 어릴 때부터 자치적인 활동의 기회, 정책결정과 행정에의 참가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와사키시에서는 아동회의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가와사키 시의 '아동권리조례'는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만든 것이 아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 가와사키 시의 어른들과 청소년들은 2년간 200번이 넘는 회의를 했다고 한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어른들과 어린이·청소년들이 인권에 대해 새롭게 배우고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그 결실로 만들어진 것이 '아동권리조례'이다.

26) 子どもの権利研究, 第2號, 2003.2., 日本評論社, 8p

가와사키시에서는 조례 제정이후에 담당부서(아동 권리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여러 관련 부서들과 조정하는 조직인 ‘아동권리 시책추진 부회’를 설치하기도 했다. 또한 11월 20일을 “가와사키 아동권리의 날”로 정하여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조례를 소개하는 팜플렛(아동용, 일반용)과 권리학습용 교재를 만들고, 교육과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 가와사키시 아동회의를 설치하여 80명의 아동을 공개모집하여 회의를 열고 있다. 인권옴부즈맨²⁷⁾을 통해 아동인권에 관한 상담업무와 인권구제업무를 하고 있다. 공개모집한 시민을 포함한 10인의 아동권리위원회를 두고 가와사키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시책들을 검증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가와사키시 외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아동에 관한 조례를 많이 제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 효고현 카와니시(川西)시에서 “아동의 인권옴부즈피스에 관한 조례”(1998년)가 제정된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인권옴부즈퍼슨(Ombuspersson)에 관한 조례나 아동권옹호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또한 아동인권의 실현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는 등 하나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2. 가와사키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많은 시민과 아동들의 목소리를 담아 만들어진 것이며, 이 조례의 내용은 ‘아동권리조례검토 연락회의’와 ‘아동권리조례조사 연구위원회’에서, 약 2년간 200회를 넘는 회의와 의견교환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다.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아동과 어른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아동을 하나의 인간(권리의 주체)로서 존중하고, 권리침해로부터 지키며, 아동이 자아를 실현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려는 생각에서 만들어졌다. 그것을 위하여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나 이념을 정리한 전반부와 아동의 생활의 장(場)에 따른 권리보장의 방향이나 구체적인 보장의 방법을 규정한 후반부로 구성된다. 21세기는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아동들이 생기있게 자라며, 자신과 타인 모두 존중될 수 있는 시대가 되기를 기원한다.

가와사키시 · 가와사키시 교육위원회

前 文

아동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인간이다. 아동은 매우 소중한 가치와 존엄을 지니며, 개성이나 다른 사람과의 차이가 인정되며, 자신이 그 자체로서 소중하기를 원한다.

아동은 권리의 전면적인 주체이다. 아동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확보, 차별의 금지, 아동의 의견의 존중 등의 국제적인 원칙 하에, 그 권리를 종합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된다. 아동에 있어서 권리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고,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답게 살기 위해서는 불가결한 것이다.

아동은 그 권리가 보장되는 가운데, 풍부한 아동기를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학습하는 것, 실제로 행사하는 것 등을 통하여 아동은 권리의 인식을 깊게 하고, 권리를 실현할 힘,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힘이나 책임 등을 체화시킬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장되기 위해서는 동시에 타인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하며, 그 권리가 상호 존중되는 것이 불가결한 것이다.

아동은 어른과 함께 사회를 구성하는 파트너이다. 아동은 현재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미래사회의 담당자로서 사회의 바람직한 방향의 형성에 있어서 고유의 역할이 있음과 동시에 그것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그것을 위해서도 사회는 아동에게 열려야 한다.

27) 인권옴부즈퍼슨(ombuds person)은 어린이와 남녀평등에 관한 시민의 인권침해에 대해 쉽게 편하게 상담이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인권구제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2002년 12월 23일 푸른부천21에서 개최한“부천-가와사키 아동인권조례 간담회 자료집”중에서).

1.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을 받아 조언하고 지원 2.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신청을 받아 필요에 따라 조사 3. 당사자간을 조정하고 관련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4. 시 소속기관에 대해 제도개선의 의견표명과 시정(是正)권고를 실시 5. 인권에 관한 과제에 대해 의견공표

아동은 동시대를 사는 지구시민으로서 국내외의 아동과 상호간의 이해와 교류를 깊게 하고, 공생과 평화를 염원하며, 자연을 지키고, 도시에 보다 나은 환경을 창조하는 것에 있어서 불가결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시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은 시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생을 진전시키고, 그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우리들은 아동 최우선 등의 국제적인 원칙에 따르고, 아동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 필요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平成원년(1989년) 11월 20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의 이념에 기반 하여, 아동의 권리의 보장을 진전시킬 것임을 선언하고,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1장 총칙(제1조~제8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시 등의 책무, 인간으로서 가지는 아동의 귀중한 권리, 가정, 보육·학교시설 및 지역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의 보장 등에 대하여 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의 보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드는 용어의 정의는 당해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에 의한다.

1. 아동 : 시민을 비롯하여 시와 관계가 있는 18세 미만의 자 기타 그들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양육·교육시설 : 아동복지법(소화 22년 법률 제164호)에 규정한 아동복지시설, 학교교육법(소화 22년 법률 제26호)에 규정한 학교, 專修학교, 각종 학교 기타의 시설 중, 아동이 양육되고, 배우기 위하여 입소하고, 通所하고 통학하는 시설
3. 부모에 대신하는 보호자 :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수양부모(里親) 또는 보호수탁자 기타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자

제3조(책무)

- ① 시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시책을 통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시민은 아동의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場合에 있어서, 그 권

리가 보장되도록 시와 협동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양육·교육시설의 설치자, 관리자 및 직원(이하 「시설관계자」라고 한다) 가운데, 시 이외의 시설관계자는 시의 시책에 협력하고 노력해야 함과 동시에 그 시설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④ 사업자는 고용된 시민이 양육하는 아동 및 고용된 아동의 권리의 보장에 관하여 시의 시책에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국가 등에의 요청) 시는 아동의 권리가 꼭넓게 보장되도록 국가, 기타의 공공단체 등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市外에 있어서도 그 권리가 보장되도록 활동해야 한다.

제5조(가와사키 아동 권리의 날)

- ① 시민들 사이에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이고 깊게 하기 위하여, 가와사키 아동 권리의 날을 둔다.
- ② 가와사키 아동 권리의 날은 11월 20일로 한다.
- ③ 시는 가와사키 아동권리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고, 광범위한 시민의 참여를 요청해야 한다.

제6조(홍보) 시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하여 그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학습등에의 지원 등)

- ① 시는 가정교육,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가운데, 아동의 권리에 대한 학습 등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조건을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② 시는 시설관계자 및 의사, 保健婦 등 아동의 권리의 보장과 직무상 관계된 자에 대하여,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좀더 깊어지도록 연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③ 시는 아동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지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자주적인 학습 등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8조(시민활동에의 지원) 시는 아동의 권리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활동에 대하여 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함과 함께, 아동의 권리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과 제휴를 도모해야 한다.

제2장 인간으로서 가지는 아동의 귀중한 권리

제9조(인간으로서 가지는 아동의 귀중한 권리)

이 장에 규정하는 권리는 아동이 인간으로서 자라고 배우고 생활하기 위해 특히 귀중한 것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제10조(안심하고 생활할 권리)

아동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하여 주로 아래에서 드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1) 생명이 지켜지고 존중되는 것
- (2) 애정과 이해를 가지고 양육되는 것
- (3) 모든 형태의 차별을 받지 않는 것
- (4)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받지 않으며, 방치되지 않는 것
- (5) 건강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며, 성장에 어울리는 생활이 가능한 것
- (6)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

제11조(있는 그대로의 자신일 권리)

아동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주로 아래에서 드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1) 개성이나 다른 사람과의 차이가 인정되고, 인격이 존중되는 것
- (2) 자신의 생각이나 신앙을 유지하는 것
- (3) 비밀을 침해당하지 않는 것
- (4) 자신에 관한 정보가 부당하게 수집되거나 이용되지 않는 것
- (5) 아동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취급을 받지 않는 것
- (6) 안심할 수 있는 장소에서 휴식하는 것, 여가를 가지는 것

제12조(자신을 지키고, 또한 지켜질 권리)

아동은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로 아래에서 드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1) 모든 권리의 침해로부터 벗어나는 것
- (2)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받는 상황으로부터 보호되는 것
- (3) 상황에 따라 적절한 상담의 기회가 상담에 어울리는 분위기에서 확보되는 것
- (4) 자신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결정할 때에, 자

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가능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그 의견이 존중되는 것

- (5)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때에, 그 회복에 적절한 분위기의 장소가 주어지는 것

제13조(자신을 풍부하게 하고, 힘을 북돋을 수 있는 권리)

아동은 그 성장에 따라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힘을 북돋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주로 아래에서 드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1) 노는 것
- (2) 배우는 것
- (3) 문화예술활동에 참가하는 것
- (4) 정보를 얻는 것
- (5) 행복을 추구하는 것

제14조(스스로 결정할 권리)

아동은 자신에 관한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로 아래에서 드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1) 자신에 관한 것을 연령과 성숙도에 맞게 결정하는 것
- (2) 자신에 관한 것을 결정할 때에, 적절한 지원 및 조언을 받는 것
- (3) 자신에 관한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

제15조(참가할 권리)

아동은 참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로 아래에서 드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1) 자신을 표현하는 것
- (2)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그 의견이 존중되는 것
- (3) 동료를 만들고, 동료와 모이는 것
- (4) 참가를 할 때에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

제16조(개별적인 필요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

아동은 그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주로 아래에서 드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1) 아동 또는 그 가족의 국적, 민족, 성별, 언어, 종교, 출신, 재산, 장애 기타의 처한 상황을 원인 또는 이유로 한 차별 및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
- (2) (1)의 처한 상황의 차이가 인정되고 존중되는 가운데에共生할 수 있는 것

- (3) 장애가 있는 아동이 존엄을 지키고, 자립하며, 사회에의 적극적인 참가가 도모되는 것
- (4) 국적, 민족, 언어 등에 있어서 소수의 입장에 있는 아동이 자신의 문화 등을 향유하고, 학습하며, 표현하는 것이 존중되는 것
- (5) 아동이 처한 상황에 따라, 아동에게 필요한 정보의 입수 방법, 의견표명의 방법, 참가의 방법 등에 대한 공부 및 배려가 주어지는 것

제3장 가정, 양육·교육시설 및 지역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의 보장

제1절 가정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의 보장

제17조(부모 등에 의한 아동의 권리의 보장)

- ① 부모 또는 부모를 대신하는 보호자(이하 「부모 등」이라 한다)는, 그 양육하는 아동의 권리의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자이다.
- ② 부모 등은 그 양육하는 아동이 권리를 행사할 때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부모 등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그 양육하는 아동을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부모 등은 양육·학교시설 및 보건, 의료, 아동복지 등의 관계기관으로부터 그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아동 본인의 정보를 얻는 때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양육의 지원)

- ① 부모 등은 그 아동의 양육에 있어서 시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② 시는 부모 등이 그 아동의 양육에 곤란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황을 특히 배려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③ 사업자는 고용된 시민이 안심하고 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19조(학대 및 체벌의 금지)

부모 등은 그 양육하는 아동에 대하여 학대 및 체벌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학대로부터의 구제 및 그 회복)

- ① 시는 학대를 받은 아동에 대한 신속하고도 적절한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구제 및 그 회복에 있어서는, 2차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아동의 심신상황을 특히 배려하여야 한다.
- ③ 시는 학대의 조기발견 및 학대를 받은 아동의 신속하고도 적절한 회복을 위하여 관계단체 등과 협력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양육·교육 시설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의 보장)

제21조(양육·교육환경의 정비 등)

- ① 양육·교육 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설치관리자」라 한다)는 그 아동의 권리의 보장이 도모되도록, 양육·교육시설에 있어서 아동이 충분히 성장하고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 ② 前項의 환경의 정비에 있어서는 그 아동의 부모 등을 비롯한 지역의 주민과 제휴를 도모함과 함께, 양육·교육시설의 직원의 주체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2조(안전관리체제의 정비 등)

- ① 시설설치관리자는 양육·교육시설의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는 것과 함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도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부모 등 지역의 주민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안전관리의 체제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설설치관리자는 그 아동의 자주적인 활동이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그 시설 및 서비스의 정비 등에 있어서 배려해야 한다.

제23조(학대 및 체벌의 금지 등)

- ① 시설관계자는 그 아동에 대하여 학대 및 체벌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시설설치관리자는 그 직원에 대하여 아동에 대한 학대 및 체벌의 방지에 관한 연수 등을 실시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설설치관리자는 아동에 대한 학대 및 체벌에 관한 상담을 그 아동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양육·교육시설에 있어서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 ④ 시설설치관리자는 학대 및 체벌에 관한 아동의 상담을 받을 때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그 상담의 해결에 필요한 사람, 관계기관 등

과 제휴하여, 아동의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4조(이지메의 방지 등)

- ① 시설관계자는 이지메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시설관계자는 이지메의 방지를 위해, 아동들을 상대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③ 시설설치관리자는 그 직원에 대하여, 이지메의 방지에 관한 연수 등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④ 시설설치관리자는 이지메에 관한 상담을 그 아동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양육·학교시설에 있어서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⑤ 시설관계자는 이지메에 관한 아동의 상담을 받았을 때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그 상담의 해결에 필요한 사람, 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아동의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시설관계자는 이지메를 행한 아동에 대하여도 필요한 배려를 하는 바탕 위에서 적절한 대응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5조(아동 본인에 관한 문서 등)

- ① 양육·교육시설에 있어서 아동 본인에 관한 문서는 적절하게 관리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 ② 전항의 문서 중 아동의 이해에 영향을 주는 것에 있어서는, 그 작성에 있어서 아동 본인 또는 그 부모 등의 의견을 구하는 등 공정한 문서의 작성에 대한 배려가 행해져야 한다.
- ③ 양육·교육시설에 있어서는, 그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 아동 본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 ④ 전항의 정보는 양육·학교 시설의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용되거나 외부에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 ⑤ 제1항의 문서 및 제3항의 정보에 관해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손상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아동 본인에게 제시되거나 제공되도록 문서 및 정보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⑥ 양육·학교 시설에 있어서 아동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처분 등을 결정하기 전에, 그 아동 본인으로부터 사정, 의견 등을 청취하는 등의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3절 지역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의 보장

제26조(아동의 성장의 장 등으로서의 지역) 지역은 아동의 성장의 장이고, 가정, 양육·교육시설, 문화, 스포츠 시설 등과 일체가 되어 그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는場인 것을 고려하여, 시는 지역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의 보장이 도모되고 아동의 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육 및 교육환경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7조(아동의 居場所)

- ① 아동에게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인 것, 휴식하여 자신을 되찾는 것, 자유롭게 놀고 활동하는 것, 안심하고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들이 가능한 장소(이하 居場所라 한다)가 귀중한 것을 고려하여, 시는 居場所에 대한 사고방식을 보급하고 居場所의 확보 및 그 존속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시는 아동에 대한 거장소의 제공 등의 자주적인 활동을 행하는 시민 및 관계단체와의 제휴를 도모하고, 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8조(지역에 있어서 아동의 활동) 지역에 있어서 아동의 활동은 아동이 풍부한 인간관계 속에서 자라기 위하여 불가결한 것임을 고려하여, 시는 지역에 있어서 아동의 자치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장 아동의 참가(제29조 ~ 제34조)

제29조(아동의 참가의 촉진) 시는 아동이 시정 등에 대하여 시민으로서 의견을 표명할 기회, 양육·교육시설 기타 활동의 거점으로 되는場에서 그 운영 등에 대하여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표명할 기회, 또는 지역에 있어서 문화, 스포츠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제 시책(施策)에 있어서 보장하는 것이 불가결한 것임을 고려하여 아동의 참가를 촉진하고, 그 方策의 보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0조(아동 회의)

- ① 시장은 시정에 대하여, 아동의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가와사키시 아동회의(이하 「아동회의」라 한다)를 개최한다.
- ② 아동회의는 아동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조직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한다.
- ③ 아동회의는 그 주체인 아동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아동의 總意로서의 의

견 등을 정리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 등을 존중해야 한다.

⑤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아동회의에 모든 아동의 참가가 촉진되고, 그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행하여야 한다.

제31조(참가활동의 거점 만들기) 시는 아동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참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들만이 자유롭고 안심하며 모일 수 있는 거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2조(자치적 활동의 장려)

- ① 시설설치관리자는 그 구성원으로서의 아동의 자치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자치적인 활동에 의한 아동의 의견 등에 대하여는 양육·교육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좀더 열린 양육·학교시설) 시설설치관리자는 아동, 부모, 기타 지역주민에게 좀더 열린 양육·교육시설을 만들기 위하여, 그들에게 양육·학교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설명을 행하고, 그들 및 양육·교육시설의 직원들과 함께 양육·학교시설을 강화하고 상호 조화되기 위하여 정기적인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4조(시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아동의 의견) 시는 아동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시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아동의 참가의 방법 등에 대하여 배려하고, 아동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장 상담 및 구제(제35조)

제35조(상담 및 구제)

- ① 아동은 가와사키시 인권옴부즈맨에 대하여,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상담하거나 권리의 침해로부터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시는 가와사키시 인권옴부즈맨에 의한 것 외에도, 아동의 권리의 침해에 관한 상담 또는 구제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관계단체 등과 제휴를 도모하

고, 아동 및 그 권리의 침해의 특성을 배려하여 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장 아동의 권리에 관한 행동계획(제36조·제37조)

제36조(행동계획)

- ① 시는 아동에 관한 시책의 추진을 할 때에 아동의 권리의 보장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도모되기 위한 가와사키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행동계획(이하 「행동계획」이라 한다)을 책정해야 한다.
- ②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행동계획을 책정함에 있어서, 시민 및 제38조에 규정한 '가와사키시 아동 권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37조(아동에 관한 시책의 추진) 시의 아동에 관한 시책은 아동의 권리의 보장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아래에 드는 사항을 배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 (1)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기반하는 것
- (2) 교육, 복지, 의료 등과의 제휴 및 조정이 도모되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것
- (3) 부모 등, 시설관계자, 기타 시민과의 제휴를 통하여 하나 하나의 아동을 지원하는 것

제7장 아동 권리의 보장상황의 검증(제38조~제40조)

제38조(권리위원회)

- ① 아동에 관한 시책의 충실을 도모하고, 아동의 권리의 보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와사키시 아동권리위원회(이하 「권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권리위원회는 시장 기타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아동에 관한 시책에 있어서의 아동권리의 보장상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다.
- ③ 권리위원회는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④ 위원은 인권, 교육, 복지 등 아동의 권리에 관계된 분야에 있어서 학식경험이 있는 자 및 시민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⑥ 위원은 재임될 수 있다.
- ⑦ 제4항의 위원 외에, 특별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권리위원회에 임시위원을 둘 수 있다.

- ⑧ 위원 및 임시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 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같다.
- ⑨ 전 각 항에서 정한 것 외에, 권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9조(검증)

- ① 권리위원회는 前條 제2항의 자문이 있는 때에는, 시장 기타의 집행기관에 대하여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해 평가 등을 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시한다.
- ②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권리위원회로부터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평가 등을 행하고, 그 결과를 권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③ 권리위원회는 전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 ④ 권리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구함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이 얻어지도록 그 방법 등에 있어서 배려해야 한다.
- ⑤ 권리위원회는 제2항의 보고 및 제3항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아동의 권리의 보장상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다.
- ⑥ 권리위원회는 전항의 조사심의에 의하여 얻어진 검증결과를 시장 기타 집행기관에게 답신(答申)해야 한다.

제40조(답신 등에 대한 조치 등)

- ①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권리위원회로부터의 답신을 존중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② 시장은 前條의 규정에 의한 답신 및 前項의 규정에 의하여 강구한 조치에 대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8장 雜則(제41조)

제41조(위임)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 기타 집행기관이 정한다.

[토론문 1]

“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에 대해

박현준(대구대 학생, 학생행진(준))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숙사에서 밤에 몰래 친구들과 PC방에 가려고 도망 나온 적이 있습니다. 10곳 남짓한 PC방을 돌아았는데 아직 우리가 어려보였는지 죄다 됐겠습니다. 돌아오는데 아뿔싸, 사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구요. 그때가 4시경이였는데 밤잠도 못자고 계속 무릎 꿇고 혼났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갔는데 어떻게 일았는지 학년 주임 선생님이 우리를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라곤 아무 말 없이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를 다리짝 만한 몽둥이로 5대씩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들 학생일 때가 좋은 거야. 학생 때만큼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고 자유로운 때가 없어.”

대한민국에 학생은 없습니다. 21살 먹은 저의 학창시절을 돌아켜봐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반 이상을 학교에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해서 총 12년을요. 사람들은 저를 학생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다른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전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입시생일 뿐이었습니다.

‘공부해야지, 공부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야지 훌륭한 사람이 되지.’

나를 위한다는 핑계로 그 많은 어른들은 공부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신의 신세한탄도 더 해서요. 자기자식은 좋은데 보내려고 학비 버느라 허리 뾰개지는 부모-노동자들도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교육이란 이름으로 모든 개성과 권리를 말살당하고 사지를 책상에 결박당한 채 벼텨야 하는 학생이 진짜 피해자입니다.

고등학교엘 입학하고 처음으로 학교에 간 날 이였습니다. 무슨 종이를 나눠주는데 잘 보니 자율학습 및 특기적성신청서였습니다. 월 들으면 좋을까, 무슨 요일에 남아서 공부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무조건 동그라미해서 내라그럽니다.

“선생님, 국어는 안 들으면 안 돼요?”

고등학교엘 처음 간 그 날, 저는 이유도 모른 채 뒤지게 혼났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맞으면서 비합리적인 규율에 복종하는 법을 체화해갑니다. 요새 학생들에게 왜라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답이 그냥입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계속

캐물으면 나오는 게 고작 '학교에서 시키니까', '안하면 맞으니까'입니다.
어른들은 단체생활, 사회생활이란 이름으로 미화된 권위주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매년 학생들이 숫자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쪼가리 하나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시험이 있다하면 꼭 학생들이 죽어납니다. 죽은 학생도 많지만 죽고 싶어도 못 죽는 학생들이 더 많지 않습니다.

공교육을 되살린다는 명분으로 내신등급제가 강화되고 나서 학생들은 같은 반 친구들과도 마음을 터놓지 못합니다. 살아남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경쟁을 체화하며 "나는 몇 등짜리, 얼마짜리 인간이다." 하는 말에 자연스레 합니다. 이러한 정글 같은 세상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개같은 교육입니다. 명박이가 봐도 한심했는지 교육개혁을 한답니다.
인수위시절부터 영어몰입교육정책 얘기를 꺼냈다가 200살까지는 장수할 만큼 욕을 얻어먹고선 한동안 잠잠하더니 요새 다시 일제고사니, 국제중이니 자립형사립고니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학생들이 사교육 받느라 힘드니까 국제중, 자립형사립고 만들면 되고~, 일제고사 시행해서 학교성적 공개해서 좋은 학교 선택하게 하면 되고~"

하지만 석차경쟁이라는 현 교육체제의 본질을 애써 무시한 명박이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저들학교의 높은 등록금은 상류계층이 아니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걸 바라보며 우리는 "돈 없으면 따라지 학교 가면 되고~"라고 노래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비도덕적인 몇몇 선생님이 문제일까요? 교원평가제를 통해 그러한 부적격교사를 걸러내면 되는 걸까요? 극성인 학부모들이 문제일까요? 그런 학부모들 모아서 캠페인을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교원평가제는 교육부, 교장 말 안 듣는 전교조선생님 걸러내는 제도에 지나지 않고, 대학간판이 사회적 신분을 결정짓는 사회에서 학부모는 누구나 극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세력들의 선동처럼 경쟁이 부족해서 일까요? 선택권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중요한 건 경쟁이 아니라 공존입니다. 또, 공정한 출발선에 있지 않는데 다양한 선택권을 준다고 해결될 리 만무합니다.

네, 진짜 문제는 바로 대학서열체제로부터 비롯된 가혹한 입시교육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입시공화국입니다. 초등학생들은 동심을 저당 잡히고 중고등학생은 밤

늦게까지 청춘을 저당 잡힙니다. 보다 좋은 대학 간판을 위하여! 친구들을 밟고 일어나 지배 계급이 되기 위하여! 교육을 살리고 학생과 학부모가 인간다움과 삶의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입시를 폐지하고 대학을 평준화해야 합니다.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과 함께, 학생의 권리를 얘기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학생의 이름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일어날 때 많은 상황은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폭발하기 직전인 교육의 위기를 관리하는데 그치지 않기 위하여, 법전 안에 간혀 있지 않기 위하여 보다 넓은 시야의 사회운동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다시 쓰여져야 합니다.

경쟁이 아닌 연대의 원리로!

우리 아이를 통해 본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

신 은 진(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학부모 입장으로 얘기하기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

2006년 3월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청소년들의 요구를 담아 두발규제 금지, 체벌금지, 강제보충 및 야자 금지, 학생회 법제화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개정안 일명 '학생인권법'을 발의했다.

2007년 12월에는 학생인권법을 온전히 담아내지는 못했으나 초중등교육법 제18조 4항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학생인권 보장이 명문화 되었다.

법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나가지만 학교 안에서 실질적으로 학생 인권이 나아지진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번에 경북도에서 실시하는 조례제정은 이러한 평가 속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다. 급작스럽게 학생인권을 명문화 하는 싸움이 아니라 조금씩 학생인권의 중요성을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알려나가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조례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로서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활동들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 당원이기 이전에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얘기하려한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 학부모회의 입김이 강하다. 기본 학부모회 임원이 되려면 그 아이가 각반의 반장 혹은 부반장이 돼야 하고, 그래서 재력 있는 부모의 아이가 아니고서는 학급 안에서 임원이 되기도 쉽지 않는 게 현실이다.

심지어는 어느 맞벌이 부모의 자녀가 아이들의 투표로 반장에 당선됐지만 부모님이 학교에 관심 갖기 어려운 맞벌이라는 이유로 선거를 통해 반장을 다시 선출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학교의 학급임원 부모는 소풍 때 선생님 도시락을 싸기 위해 8만원씩을 걷고, 또한 반장

이 되면 기본 반장 턱이라고 해서 햄버거를 사주고, 부반장의 어머니는 담임을 위한 미니 냉장고를 준비해야 한다.

이는 학급 반장이 아이의 인기와 품성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재력에 의해 결정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돈에 의해 할 수 없는 것이 생기는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지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시기에 나는 민주노동당 당원으로서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한 아이의 엄마로서 일제고사 반대 서명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 아이의 반에서 생긴 일을 말하고자 한다.

일제고사를 앞둔 며칠 전 담임교사는 아이들에게 '이번에 우리 반 반 평균이 높으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제고사를 위해 이미 3번의 모의시험을 치른 적이 있는 아이들은 반에서 평균이 낮은 2명의 아이에게 반 평균을 위해 학교에 나오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것을 요구받은 2명의 아이나, 요구했던 반 아이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아마 '절대로 낙오자가 되면 안 돼', '경쟁에서 탈락한 친구는 버려도 된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살 것이다. 친구들끼리 서로 어울리고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할 시기부터 경쟁하고 상처 입히고 입게 될 거란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담임선생님 얘기다.

아이의 담임선생님은 평소에 폭력, 체벌, 폭언, 성추행등을 아이들에게 서슴지 않았던 교사였다. 심지어 수업시간에 수업을 하지 않고 야한 동영상을 보기도 하였다.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호소하면서 이 사실을 알았던 나는 반 엄마들을 모아 이 교사를 퇴출하는 운동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내가 민주노동당 당원이 아니었다면 쉽게 시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낙인이 찍힐까봐 쉽사리 담임선생님을 처벌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 사건을 전교조와 참학, 그리고 학부모들과 함께 하면서 선생님이 타 학교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쫓겨난 것을 확인하였고 이후에 이 선생님을 퇴출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사례는 나만 겪은 것이 아닐 것이다.

이 땅에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도 보호해 주지 못함은 늘 따라다닐 별난 아이 별난 부모라는 꼬리표 때문이 더 어렵게 하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참으로 할 때가 많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런 청소년들과 학부모를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

학생인권 조례법안을 서명 받는 과정을 통하여 학부모들에게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과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 부당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들을 모아내는 활동이 돼야 할 것이다. 이런 활동은 학교 안의 부적격 교사에게는 경고가 될 것이다.

올해 초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겪은 부당한 활동을 막아보고자 학교에 운영위원 신청을 한 적이 있다. 그 때 당원은 안 된다고 하여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번 학생인권 조례운동을 통해 나와 같은 경험을 가진 학부모들에게 적극 우리의 권리를 알려 줄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청소년은 두발, 학부모는 체벌, 그리고 사회적으로 0교시, 강제보충 및 야자를 금지하는 운동을 각개로 해나가면서 경북학생인권조례법안으로 모아내는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경북학생인권조례법안을 제출하면서 경북 지역에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였으면 한다. 조례제정은 주민발의든 의원발의든 반드시 밑바탕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는 물론 일반시민들에게 학생인권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동참하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8년 11월 3일 학생의 날에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초중등교육법개정안 '학생인권법' 을 다시 발의했다. 이는 이전 법안에서 학생회법제화를 제외하고 4.15 학교자율화 정책 생긴 0교시, 강제보충 심야학습, 두발규제,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다시 한 번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았다.

중앙과 지역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학생인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동의 방향을 정하고 실천해 나가는 활동을 민주노동당도 함께 해 나갈 것이다.

[토론문 3]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해

오 금 희(교사, 포항 세화고)

학생 인권에 대해 말을 하려니 마음이 몹시 불편합니다. 가장 먼저 학생 인권을 존중하자고 나서야 할 교사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교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며 교육활동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교사로서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상과 현실 속에서 이중적인 모습으로 엉거주춤 서 있는 초라한 모습이 보입니다. '학생에게 말 한 마디를 건네더라도 따뜻하게 해야지. 혼낼 일이 있으면 체벌하지 말고 감화시키도록 노력해야지.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가르치지 말아야지. 가정 형편이 어려울수록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니 더욱 사랑해줘야지. 학부모와 상담할 때는 친절하게 해야지.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노동자가 되라고 가르쳐야지.' 사범대 다닐 때부터 간직한 제 교육적 소신이고 제가 교사로 버틸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이 모든 모습이 위선입니다. 입시교육을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는 자율을 가장한 야간학습을 지도하라는 미션을 받습니다. 짧은 시간에 아이들을 평정해서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용히 해. 본보기로 한 명 맞고 시작할까?" 여지없이 언어폭력 휘두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 학년 350명에 달하는 혈기 왕성한 아이들을 책상 앞에 주저앉힐 수 없습니다.

버릇없이 대들고 벌떡거리는 사고뭉치 아이는 웬만해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가정형편이 불우한 것을 감안해도 용서하기에 너무 죄가 큅니다. 고운 말로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아이를 혼내고 때리고 징계 준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 아이 말고도 내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가 34명인데 빨리 그 아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를 필요로 하는 다른 아이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는 수업을 더해 달라.', '우리 아이는 원래 친구를 잘못 사귀어 그렇다.', '나는 손 한 번 안 대고 키운 자식인데 두 시간이나 무릎 끓게 했느냐.....' 아이를 감싸기 위해 거짓말하고 아이말만 믿고 교사를 궁지로 내모는 학부모는 너무 버겁습니다.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기 어렵습니다.

학교를 평가할 때 어느 대학 몇 명 보냈냐고 묻는 학부모와 지역사회, 우리 대한민국 속에서 교사는 보충수업 강제로 해야 하고 야간자율학습 강제로 해야 하고 모의고사 강제로

치게 하고 성적 상담 자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아이들에게 학생은 공부 잘하는 것이 효도라고, 또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직장 얻을 수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고 월급 많이 받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라고 은근히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은 교사 개인의 도덕적 양심이나 소신만으로 할 수도 없을뿐 더러 해보려고 해도 그것은 언 밭에 오줌 누는 것에 불과합니다. 공부에 흥미가 없는 아이에게 강제로 자율학습 시키면서 상냥하고 친절하게 “힘들지?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 했다고 해서 그 아이의 인권을 존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합니다.

학생 인권을 지켜주려면 우리 사회가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입시교육을 폐지해야 합니다. 입시교육 자체가 인권 묵살 교육입니다. 학생, 교사 모두의 인권을 묵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권을 지켜줘야 합니다. 자칫 교사와 학생을 대립적인 관계로 보고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려면 교권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권이 없는 교사가 인권을 가르칠 수 없고 교권이 없는 교사에게 학생은 인권이 무엇인지 배우기 어렵습니다.

셋째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 곧 우리 사회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인이 우리나라에 놀러 왔다가 밤늦게 귀가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한국은 집단적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나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가슴이 뜨끔해지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부모, 교사, 학교, 국가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기는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내 아이가 당한 작은 사건에만 흥분하지 말고 구조적인 치부를 서로 내놓고 얘기해서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III. 학생인권 관련

법률 및 권리

학생인권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및 권고

차례

- 1) 교내 집회 강제 해산, 조기 등교 강요 등은 인권침해(2008. 10. 21, 07진인4150)
- 2) 학생 학교수업 중 경찰 조사 등 인권침해(2008. 7. 3, 08진인1739)
- 3) 학생·청소년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돼야(2008.5.23)
- 피해사례 신속히 조사하기로 결정
- 4) 자치단체가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 선발해 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2008. 5. 19)
- 5) 학교 선택권은 학생에게 있다(2008. 5. 15)
- 학생생활규정 위반했더라도 퇴학처분 및 관내학교 전학불가는 인권침해, 경기도 교육감에 학교장 권고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 6) 성적우수자반 운영으로 인한 학생인권 및 평등권 침해(2008. 5. 19, 07진차459)
- 7) 과도한 두발, 복장 검사 없앤다(2008. 3. 21)
- 각 시·도 교육청, 학생체벌 금지, 과도한 두발·복장 검사 금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키로 -
- 8) 학생에게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2008.3. 18)
- 인권위, P고등학교장에게 “표현의 자유 보장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권고
- 9) 규정 위반한 체벌은 인권침해 (2008.3.18)
- 인권위, 규정위반 체벌행위 교사에게 경고조치 및 특별인권교육 권고-
- 10) 성적만으로 정독실 입실 순서 정하면 차별 (2008.2.4)
- 11) 나이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2007. 12. 14, 06진차475)
- 12) 나이를 이유로 한 교육 이용 차별(2007. 10. 9. 07진차221)
- 13) 야구선수 이적동의 불허로 인한 인권침해(2007. 9. 7, 07진인898)
- 14)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2007. 4. 16, 06진인836)
- 15)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2007. 3. 28, 06진차418)
- 16)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정치활동 제한(2007. 2. 12, 05진차297)

- 17) 집회의 자유 침해 등에 의한 인권침해(007. 1. 31, 06진인2030)
- 18) 학생간 폭행 방치에 의한 인권침해(2007. 1. 15. 06진인943)
- 19) 부당 퇴학처분에 의한 인권침해(2007. 1. 15, 06진인3067)
- 20) 대학입학 특별전형 응시자격 차별(2006. 12. 22, 05진차1041)
- 21) 방통대의 청각장애학생 학습권 차별(2006. 12. 22, 06진차409)
- 22)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2006. 12. 11, 06진차411)
- 23) 성적을 이유로 한 학급회장 자격 제한(2006. 11. 28, 06진차449)
- 24) 대학교의 수시모집시 검정고시 출신자 차별(2006.10. 9, 05진차100 등 5건)
- 25)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등(2006. 8. 29, 04진차 386)
- 26) 부당 퇴학에 의한 인권침해(2006. 6. 28, 06진인1030)
- 27) 성별을 이유로 한 신입생 모집 차별(2006. 5. 29. 06진차37)
- 28) 성별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2005. 12. 26. 04진차84,286,287)
- 29) 부당한 퇴학처분관련 인권침해(2005. 9. 28. 05진차250)
- 30)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2005. 9. 28. 05진차517)
- 31) 학교급식관련 지문날인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2005. 8. 31. 05진인1055)
- 32) 두발제한관련 인권침해(2005. 6. 27. 05진차204와 2건)
- 33)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에 대한 의견 표명(2005. 3. 25)
- 34) ○○중학교의 학교폭력관련 인권침해(2005.3.14. 04진인3256)
- 35)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4. 10. 11)
- 36) 대학시간강사 제도 개선 권고(2004. 5. 24)
- 37) 기타사유에 의한 교육시설 이용차별(2004. 2. 16. 03진차27)
- 38) 국·공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원으로 미임용된 자에 대한 구제권고(2003. 9. 25)
- 39) 사회적신분(비학생청소년)에 의한 차별(2003.9.15. 03진차127 결정)
- 40) 학교내 장애인이동시설 미설치(2003.5.21. 03진인26 결정)
- 41)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관한 개선 권고(2003. 5. 12)
- 42) 초중고교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인권내용관련 직권 수정 권고(2002. 10. 28)
- 43)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의견(2002. 9. 9)
- 44) 나이를 이유로 한 대학신입생모집 과정의 차별(2002. 5. 23. 02진차22)

*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2002.9.9)

*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2005.6.27)

1) 교내 집회 강제 해산, 조기 등교 강요 등을 인권침해 (2008. 10. 21, 07진인4150)

▶ 울산 소재 S중학교장에게 △학생들의 교내 집회를 강제 해산하고 집체교육과 체벌을 가한 것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과, △조기 등교, 휴대폰 소지 금지 등의 정책에 대해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할 것을 권고.

▶ 학내 집회 강제 해산은 학생의 집회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는 집회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개최되었고, 다른 학생과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평화적으로 전개되었고, 두발자유와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 등 학생의 권리와 관계된 집회였던 점으로 볼 때, 불법집회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학교측이 불법집회로 규정해 해산시킨 행위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 정규 수업시간에 집체 교육을 시킨 것은 자기의사결정권 침해

국가인권위는 당일 집회에 대한 교장 및 학생부장의 훈시와 체벌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통상의 집체 교육으로 보기 어려우며, 통상의 교육이라 하더라도 집체 교육시간을 이용해 학생의 정당한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훈계한 것은 향후 학생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

▶ 학생 체벌은 신체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는 체벌 양태가 학교측이 마련한 '학생체벌 규정'의 제반 규정, 즉 체벌 원칙, 절차, 단계 등을 준수하지 않는 등 학생 지도 목적 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가혹한 체벌로 보았으며,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체벌을 직접 행한 김모 교사와 체벌을 방조한 교장 및 생활지도부 소속 하모 교사에 대하여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

▶ 교내에서 휴대폰 소지 금지한 것은 자기의사결정권 침해

학교측은 설문지에 "각 가정에서 학생과 잘 의논하여 찬성하는 쪽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로 학생 의견을 반영했다고 주장하나, 국가인권위는 우리

나라 가족의 의사소통 및 결정구조 등을 감안할 때, 학부모와 학생이 대등한 입장에서 논의해 결정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국가인권위는 휴대폰 소지 금지 조치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요즈음 학생들에게 휴대폰은 생활의 필수품이고, 휴대폰 사용에 따른 순기능도 상당하므로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자기의사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 따라서 수업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재검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 조기 등교를 강요해 자율학습을 시킨 것은 자기의사결정권 침해

국가인권위는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 해도 이해 당사자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학생을 1시간 일찍 등교시켜 자율학습을 시키는 정책은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국가인권위는 특별한 이유 없이 법령에 규정된 정규 수업 외에 학교생활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제 10조에서 보장하는 자기의사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학생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조기 등교와 관련한 정책을 재검토 할 것을 권고.

인권위는 교사의 진술서 요구 자체로 학생은 행동을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는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

2) 학생 학교수업 중 경찰 조사 등 인권침해 (2008. 7. 3, 08진인1739)

▶ 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서장을 서면경고할 것과, 경찰 정보활동의 업무범위, 원칙,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징계조치하고, 피진정인 2,4,5에 대하여 계고조치를, 피진정인 3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하며, 또한 학원분야 정보활동 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관내 경찰 정보관들에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해당 경찰서장에게, 업무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누출시키지 않도록 재발방지대

책을 수립 시행하고, 경찰서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지방교육청 교육감에게 학내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침 및 매뉴얼 마련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학생지도 담당교사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3) 학생·청소년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 돼야 (2008.5.23)

-피해사례 신속히 조사하기로 결정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8개 청소년 인권단체와 학생 94명 등이 2008. 5. 22. 제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 관련 긴급구제 요청에 대해,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 등을 감안해 5. 23.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어 긴급구제 필요성을 논의.

▶ 국가인권위는 긴급구제조치 결정은 유보하되, 집회참석 방해 등 진정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기로

▶ 집회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자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 학생과 청소년 역시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와 평화롭게 집회에 참여할 자유가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국제아동권리협약」 등에도 명시(제12조 '당사국은 청소년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15조 '당사국은 아동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되어 있음.

▶ 2008. 3.부터 개정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문화

▶ 국가인권위는 최근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고 학생 경찰조사, ○○교육청 집단행동 예방지침 시달, 장학사 및 교감의 현장 배치 등)들이 표현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으며, 인권단체와 학생들이 제기하고 있는 피해 사례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

4) 자치단체가 성적 기준으로 학생 선발해 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2008. 5. 19. 07진차1031)

▶ 전라북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북 순창군은 지방자치단체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숙형 공립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생을 일부과목(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통해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이는 차별"라며 2006. 1., 2007. 11. 2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

▶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해당 자치단체 군수에게 공교육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숙학원 선발방식, 운영주체, 학사운영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

▶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순창군이 운영하는 기숙형 공립학원은 군의 공적 예산이 투여되고 있었고, 군 관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자체선발고사(국어, 영어, 수학)를 통하여 성적순으로 200명을 선발.

▶ 학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탐구 네 가지 영역으로 방과 후 4시간의 보충수업에 이어, 23시 35분까지 자율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강사는 각 영역별로 3년 이상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학원 강사 경력이 있는 자들 중에서 선발.

▶ 순창군은 시골 지역 자치단체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내 정규적인 중·고등학교 교육체계만으로는 지역 인재 양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공교육 과정을 마련해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그 취지를 설명. 그러나 A군은 해당 지역의 인재가 "명문대학 입학"을 통해서만 양성된다고 볼 인식의 근거나, 대다수의 군내 학생들을 배제하면서까지 '성적 우수 학생'을 위해 국가예산을 투입해 차별적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 못함.

▶ 차별적 교육환경으로 인한 학생들의 박탈감 호소

국가인권위는 순창군 일부 학교 학생들과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학생들은 다수 학생을 배제한 공립학원 운영이 학생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평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느끼고 있다고 답변. 또한 공립학원 설치여부에 대해 A군은 교사, 학부모들에게 의견을 청취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공립학원 운영을 시작할 당시 당사자인 학

생들의 의견을 묻거나 반영한 사례는 찾을 수 없었음.

▶ 공교육은 모든 학령아동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국가 혹은 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공교육은 헌법 제31조제1항에 의거 모든 학령아동에게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학교 등 교육기관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요청에 따라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 교육체계의 운영에 대하여 상당한 재량을 가지지만, 이 재량은 “인격” “생활능력”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의 함양이라는 교육기본법상의 목적에 구속되는 한도 내에서만 유효하다 할 것.

▶ 공공기관의 예산은 공교육의 이념을 실현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은 교육기본법의 틀 속에서 공교육의 이념을 실현하는 수준과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목적과 수단의 합리성, 정당성이 엄격히 평가되어야 함. 그러나, 순창군의 공립학원 설치·운영은 주요 교과목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된 일부 학생들에게만 특별 수업 및 기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이는 공교육의 취지와 목적의 범위 내에서 시행 가능한 합리적 예산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움.

▶ 교육 기회로부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침해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공립학원의 운영이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대다수 학생들의 열등감·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

▶ 국가인권위는 순창군수에게 공교육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립학원 선발방식, 운영주체, 학사운영 등을 개선하되, 이미 순창군청에서 문제점을 인식해 2007년에 실시한 연구용역인 “순창군 교육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고려하여 공립학원 운영 전반에서 관내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대책을 수립하고,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

5) 성적우수자반 운영으로 인한 학생인권 및 평등권 침해 (2008. 5. 19, 07진차459)

▶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등 10개 학교장들에게 특정 과목의 학업 성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여 상시적으로 성적 우수자 반을 편성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므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성

적우수자반 제도를 시정 하되,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학습 성취도와 적성 및 취향에 맞추어 교육의 기회와 내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

▶ 피진정인 ○○도교육감에게 현재 피진정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성적우수자반이 시정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과, ○○도내 학생들에게 학업성취도, 적성 및 취향에 따라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균등한 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교육지원을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

6) 학교 선택권은 학생에게 있다 (2008. 5. 15)

- 학생생활규정 위반더라도 퇴학처분 및 관내학교 전학불가는 인권침해 경기도 교육감에 학교장 권고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 A씨(남, 48세)는 아들(피해자)이 재학중인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가 명찰미부착, 야간 자율학습 미참여 등 ‘학생생활규정’ 위반으로 기준 벌점을 초과한 학생에게 퇴학예정 및 전학권고를 하고, 퇴학 예정자에게는 관내 학교로의 전학을 불허해 강원도로 전학을 가야 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 접수

▶ 국가인권위는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학생에 대한 징계는 1. 학내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퇴학처분 등 단계별로 규정되어 있고, 징계처분 시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 퇴학 예정조치 및 전학권고를 받은 학생들에게 관내 학교 전학을 허용할 수 없다는 특별한 법령이 없음을 확인

▶ 따라서, ○○고등학교의 행위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의적인 조치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기한 학생의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 국가인권위는 △ 경기도 교육감에게 ○○고등학교장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 △ 경기도 교육감 및 ○○고등학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 권고

7) 과도한 두발, 복장 검사 없앤다 (2008. 3. 21)

- 각 시·도 교육청, 학생체벌 금지, 과도한 두발·복장 검사 금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키로 -

- ▶ 체벌과 관련하여 각 시·도 교육청은 체벌과 단체기합 등 비교육적 지도를 금지하고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체벌교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한편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예정.
- ▶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두발 및 복장과 관련해서도 각 시·도 교육청은 강제이발 및 과도한 복장검사를 지양하고 일선 교육청 및 학교에 이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예정.
- ▶ 학생들이 자치활동 경험을 통해 자율성과 책임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학생들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참여기회 확대, 자치활동 공간 마련 및 예산 지원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 추진.
- ▶ 학교생활규정 중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조항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참여와 민주적 합의를 거쳐 전면 개정하고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규정의 인지도와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
- ▶ 인권친화적인 학교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각 시·도 교육청은 일선학교에서 모든 학생에 대해 일률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과도한 소지품 검사를 지양하고, 퇴학이나 처벌 등 제재보다는 선도 위주의 징계제도를 운영하며, 학생생활환경 조사 시에도 개인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실시하도록 추진할 예정.

8) 학생에게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2008.3. 18)

-인권위, P고등학교장에게 “표현의 자유 보장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권고

- ▶ 지난 2007년 4월 박모 학생이 P고등학교장을 상대로 “학생인권관련 토론회 전단지를 교내에 배포하였는데,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를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진정인에 대해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P고등학교장에게 학교 안에서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학생 표현물의 표현 범위 및 절

차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만드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 인권위는 이 진정사건 조사결과, 진정인이 배포한 전단지는 학생인권을 위해 외부 단체에서 개최하는 토론회의 참석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전단지의 교내 배포 절차와 위반 시 징계에 대한 명시적 학내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를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인에 대해 징계절차를 진행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위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헌법 제21조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9) 규정 위반한 체벌은 인권침해 (2008.3.18)

-인권위, 규정위반 체벌행위 교사에게 경고조치 및 특별인권교육 권고

- ▶ “2006년 8월 김 모 교사(남, 39세, 피진정인)가 A고등학교 재학생인 김 모군(남, 2학년, 피해자)을 두발 지도하는 과정에서 지도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업시간에 앞으로 나오게 해서 출석부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수업시간 동안 무릎을 끓고 앉아 있도록 하였으며, 다시 피해자를 교무실 복도로 데려가 손으로 얼굴을 4, 5회 때려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같은 해 9월 심모씨(여, 42세, 학부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해당 고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취할 것과 국가인권위에서 실시하는 특별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
- ▶ 국가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체벌(뺨때리기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해당 고등학교 「생활지도 규정」 제100조 및 제101조에서 정한 학생지도 방법을 벗어난 것으로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

참고: 관련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⑦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지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생활지도규정」(사건 해당 고등학교)

제100조 (학생체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에는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사는 감정에 치우친 체벌을 해서는 안되며, 체벌기준에 따라야 한다.
2. 교사가 체벌할 때는 사전에 학생에게 체벌 사유를 인지시켜야 한다.
3. 체벌도구는 지름 1.5cm 내외로 길이는 60cm이하의 나무로 하며, 직선형이어야 한다.
4. 체벌 부위는 둔부로 한다. 단, 여학생의 경우는 대퇴부로 제한한다.
5. 1회 체벌봉 사용 횟수는 10회 이내로 하고, 해당 학생에게 상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제101조 (체벌의 기준) 체벌은 교육상 필요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3. 다른 학생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경우
5. 학습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6.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대드는 경우
7. 기타 교육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10) 성적만으로 정독실 입실 순서 정하면 차별 (2008.2.4)

▶ “부산광역시 소재 A고등학교가 성적우수자에게만 ‘정독실’(A고등학교의 경우 야간자율학습 시 활용하는 별도의 공간을 말함) 입실을 허용해, 이에 포함되지 못한 학생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2006년 5월 동 학교 교사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정독실 입실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성적순이 아닌 능력에 따라 합리적인 입실 기회를 부여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A고등학교 교장에게 권고.

▶ 국가인권위 조가 결과 A고등학교의 정독실은 2개의 일반교실을 하나로 합쳐 만든 넓은 공간이었고, 사설 독서실처럼 책상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 정숙한 분위기에서 자습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정독실 운영과 관련하여 동학교 1학년 2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3.4%가 정독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일반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91.2%는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로는 성적우수 학생들이 정독실로 이동함에 따라 학교 측의 일반교실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져 자율학습 분위기가 저하됐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 국가 혹은 자치단체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공교육은 헌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모든 학령아동에게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제공돼야 합니다. 정독실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학교가 특정한 자습교육 방식을 선택했을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학생들을 차별해서는 안 될 것.

▶ 학생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독실 입실기준은 자습 의지, 학습 능력, 생활환경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A고등학교는 정독실 이용자격을 학업성적으로만 정함으로써 입실자와 비입실자를 성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분리시키고 결과적으로 입실하지 못한 학생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심어줌.

▶ 국가인권위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고등학교가 정독실 입실을 성적 우수자에게만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 판단하고, A고등학교 교장에게 합리적 기준에 따라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와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학교 측이 정독실 공간의 한계 등으로 이용자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은 학업성적뿐 아니라 여타의 지표들(자율학습 의지, 학업개선 및 향상 정도, 교우관계 및 인간관계, 가정형편 등)을 동시에 적절히 고려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

11) 나이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2007. 12. 14, 06진차475)

서울시내 소재 국·공립 도서관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열람실 및 자료실 입장은 전면 제한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여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개방할 것을 권고

12) 나이를 이유로 한 교육 이용 차별 (2007. 10. 9. 07진차221)

○○대학교 항공운항학과의 2007학년도 신입생 선발에 있어 병역미필자는 1987. 1. 1.(만 20세) 이후 출생자, 병역필자 및 병역면제자는 1983. 1. 1.(만 24세) 이후 출생자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한 것은 나이에 의한 차별이므로 신입생 모집이 나이에 의해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

13) 야구선수 이적동의 불허로 인한 인권침해 (2007. 9. 7, 07진인898)

피해자에 대한 야구선수 이적 동의 불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2007학년도 '학교체육 기본방향'의 '체육특기생의 진학 및 전·출입 제도 개선사항'의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고, ○○도교육청의 2006년 '학교체육선수 관리지침' 뿐만 아니라 '도내 우수선수 타·시도 전출 억제' 대상 선수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초등학교장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야구 선수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권고

14)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2007. 4. 16, 06진인836)

○○고등학교 교사가 수학여행 기간 중 지시사항(24시 이후 이동금지 등) 위반 학생들(5명)에 대해 엎드려 팔굽혀펴기를 20여회 실시하고, 동 학생들을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뺨을 구타하고, 학생부장선생이 만류하자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방으로 데리고 가 또 다시 뺨을 쥐고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체벌을 하고 이후 동 사건 관련 회의중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욕설 등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과 수치심,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

● 교사의 폭행 관련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진정요지

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제주도 수학여행 중 피진정인의 학생지도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으로부터 팔굽혀펴기 벌을 받은 후 개별상담 중 말대꾸를 한다며 뺨과 머리를 난타 당하고, 학생부장 선생이 이를 만류하자 아무도 없는 방으로 끌려가 또 다시 뺨을 맞는 등 폭행당하였다.

나. 또한 위 사안으로 진정인이 학교를 항의 방문하자 피진정인은 교장·교감·진정인 등이 참석한 공식 회의석상에서 매우 불쾌해 하며 피해자를 "싸가지 없는 놈, 재수 없는 놈, 교활한 놈"이라고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 및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주문

○○교육감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결론

피진정인이 수학여행 기간에 피해자를 지도하면서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소속학교의 「체벌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과도한 체벌을 한 행위 등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과 수치심,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을 줌으로써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교육감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규정

가.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⑦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다. 체벌규정(○○고등학교)

제2조(시행원칙) ①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체벌을 불허한다.
② 교내 규율 유지 및 밝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고, 마음의 교정 및 선도, 타 학생의 권리옹호를 위하여 제한적으로 체벌을 할 수 있다.
③ 체벌 문화를 지양하고 민주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학교 문화 창출을 위해 '체벌없는'

학교만들기 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4조(체벌의 인정범위) ① 교육상 필요하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 체벌을 할 수 있다.

② 학생 본인이나 학부모가 체벌을 원할 경우 체벌을 할 수 있다.

제5조(체벌의 절차) ① 체벌전 학생이 무엇을 잘 못했는가를 밝힌다.

② 체벌전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이상(질병 등) 유무를 확인한다.

③ 체벌은 교장이나 교감의 허락을 받은 후에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체벌을 한 후에 체벌사실을 교장이나 교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④ 담임 선생님은 체벌을 한 후에 체벌 사실을 교장 교감에게 보고 할 수 있다.

제6조(체벌의 방법)

① 체벌은 기합에 의한 체벌과 매에 의한 체벌만을 인정하며 그 외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일부 학생의 과오 행위에 대하여 학급전체나 분단 전체를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체벌은 해당 교원과 학생의 감정순화를 위하여 즉시 체벌만은 가급적 피한다.

③ 체벌은 가급적 다른 학생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실시한다. 특히 매에 의한 체벌은 다른 학생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만 해야 한다.

④ 기합에 의한 체벌은 팔을 뻗고 엎드리기, 무릎 꿇고 앉아있기, 쪼그려 앉아서 걷기, 손 들고 서있기, 일정한 거리를 달리기 등으로 제한한다.

⑤ 매에 의한 체벌은 회초리(길이 60cm 이내, 지름 2cm이내의 표피가 매끈한 나무)나 주걱(길이 60cm이내, 주걱 부분(15cm×30cm×1.5cm 이내의 나무)만을 사용하여 10대까지만 할 수 있다.

⑥ 다음과 같은 체벌은 어떠한 경우라도 해서는 안 된다.

가. 대걸레 자루, 야구 방망이 등의 도구를 사용하는 체벌

나.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뺨이나 머리를 가격하거나 발로 차는 등의 손, 발을 이용한 체벌

다. 원산폭격, 책상 들고 서 있기 등과 같은 과도한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

라. 인격 모독적인 언어, 비속어, 신체장애 및 성적 모욕어 등을 사용한 언어폭력

15)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2007. 3. 28, 06진차418)

피진정인 ○○과학기술고등학교장 및 ○○○미디어고등학교장에게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장애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환경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시교육감에게 통합교육 및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16)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정치활동 제한 (2007. 2. 12, 05진차297)

국공립대학교 총장에게 대학생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학칙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학생 정치활동 제한 규정을 시정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

17) 집회의 자유 침해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07. 1. 31, 06진인2030)

학생 두발규제 등 『학교생활규정』 개정시 학교공동체 구성원간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통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과 근거가 없이 휴대폰을 수거, 열람하고 소지를 금지케한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국제인권협약 『아동의 권리』 제12조를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학교생활규정의 "휴대폰 소지금지" 규정을 개정·보완할 것을 권고

18) 학생간 폭행 방지에 의한 인권침해 (2007. 1. 15. 06진인943)

피해자가 6학년 학교생활 동안 수시로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특히 가해학생들이 경찰에 고소되어 법원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병원 입원 및 4주 진단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은 학교측 및 지도·감독기관인 관할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학교폭력 예방업무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임

19) 부당 퇴학처분에 의한 인권침해 (2007. 1. 15, 06진인3067)

○○고등학교생활규정은 학생의 퇴학처분을 학생선도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고등학교는 2006. 9. 21. 학생선도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진정인에게 사회봉사 5일의 징계처분을 결정하면서 진정인의 퇴학처분 여부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결재 상신한 바, 이는 진정인의 퇴학처분을 실질적으로 학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것임. 따라서 학생선도협의회를 개최하여 진정인의 퇴학처분을 재심의할 것과 향후 학생 퇴학처분시 학교생활규정에 정해진 적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

20) 대학입학 특별전형 응시자격 차별 (2006. 12. 22, 05진차1041)

대학교 입학시 국가유공자 자녀 특별전형에 있어 응시자격을 졸업년도 기준으로 제한한 행위를 시정할 것을 권고.

21) 방통대의 청각장애학생 학습권 차별 (2006. 12. 22, 06진차409)

청각장애학생의 학습권은 비장애학생의 학습권과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바, 방송통신대학교는 청각장애학생들이 출석수업에서 강의 내용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는 한 그들에게 수화통역이나 문자통역을 지원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 한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함. 따라서 방송통신대학교 총장에게, 청각장애학생들의 출석수업에서 이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수화통역이나 문자통역 등 적절한 편의조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2) 장애를 이유로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2006. 12. 11, 06진차411)

공립특수학교인 ○○학교가 통학버스를 운행하면서 장애학생들을 집 근처가 아닌 집에서 7~30킬로미터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승하차시키는 것은, 비장애학생들과 달리 장애학생들은 독립적으로 해당 거리를 무사히 걸어서 귀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장애학생에게 비장애학생들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교육환경의 조건을 제공하는, 적절한 편의제공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함. 따라서 해당 도교육감에게, ○○학교에 등하고하는 장애학생들의 교육학습권이 실효성 있게 보장되도록 현재의 통학버스 운송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

23) 성적을 이유로 한 학급회장 자격 제한 (2006. 11. 28, 06진차449)

학업성적(80점 이상인 자)으로 학급회장 자격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

24) 대학교의 수시모집시 검정고시 출신자 차별 (2006. 10. 9, 05진차100 등 5건)

가. 대학교 수시모집시 검정고시출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지원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정규고등학교의 학력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검정고시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검정고시출신자를 차별하는 것임

나. 특히, 최근 수시모집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전체 대학선발과정의 50%에 해당하게 된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검정고시출신자로 하여금 지원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학입학과정에서의 실질적 응시기회의 박탈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다. 따라서 수시모집시 검정고시 출신자라는 이유로 응시기회가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권고

⇒ 2008년도부터 개선조치 적용

25)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등 (2006. 8. 29, 04진차 386)

화교학교의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화교들의 자기 언어로 교육받을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화교학교 출신학생이 한국학교로의 전·입학이나 상급학교로의 진학시 학력을 인정받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26) 부당 퇴학에 의한 인권침해 (2006. 6. 28. 06진인1030)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향후 학생 징계시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고 해당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충분히 허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27) 성별을 이유로 한 신입생 모집 차별 (2006. 5. 29. 06진차37)

신입생 모집시 성별에 따라 모집인원을 정하여 구분모집 하지 말 것을 목포해양대학에 권고

⇒ 여학생 입학생 비율을 매년 1%씩 증가시키기로 함(현재 10%모집)

28) 성별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2005. 12. 26. 04진차84,286,287)

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 차원에서 적절한 배려를 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것을 권고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은 종전 훈령 내에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정한 확인을 거쳐 출석으로 인정(초중고 여학생 대상, 2006. 3.부터 시행)

29) 부당한 퇴학처분관련 인권침해 (2005. 9. 28. 05진차250)

고등학교 학생이 두발자유화를 위한 집단행동을 촉구하는 전단을 작성·배포하였다

고 하여 학칙위반으로 퇴학 처분하면서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당해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을 재심의하고, 학생징계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토록 학생선도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30)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2005. 9. 28. 05진차517)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에게 앞 번호를 부여하고 여학생에게 뒷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여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초등학교장에게 출석부 번호부여시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31) 학교급식관련 지문날인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2005. 8. 31. 05진인1055)

각급 학교에서 급식과 관련하여 학생식당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에게 이의 방지를 위해서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의 장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유사사례의 방지를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 조치할 것을 권고

32) 두발제한관련 인권침해 (2005. 6. 27. 05진차204외 2건)

두발단속 시 규정을 어긴 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 교사가 강제이발을 한 것은 학생들의 인격권 침해이므로 해당 고등학교장은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고, 중학교 여학생에 대하여 머리를 묶지 못하게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교육목적상 필요최소한의 제한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중학교장은 학생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

33)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에 대한 의견 표명 (2005. 3. 25)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하고 이를 검사·평가하는 것은 국제인권 기준 및 헌법에서 보장하는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개선하고 초등학교에 일기쓰기 교육이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도록 의견 표명

34) ○○중학교의 학교폭력관련 인권침해 (2005.3.14. 04진인3256)

피해학생의 담임, 교감, 교장은 학교폭력 및 집단 괴롭힘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방지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 및 진정인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하고, 학교장에게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가해학생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사과 등을 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35) 교육기본법증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증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증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2004. 10. 11)

교육기본법증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증개정법률안 및 학교보건법증개정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정보인권의 충분한 보장을 위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

36) 대학시간강사 제도 개선 권고 (2004. 5. 24)

교원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대학 시간강사는 전임교원과 비교하여 근무조건·신분보장·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고, 그 대우는 합리성을 잃은 것이어서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또한 결과적으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도 해손될 우려가 있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시간강사의 차별적 지위를 개선할 것을 권고

37) 기타사유에 의한 교육시설 이용차별 (2004. 2. 16. 03진차27)

대학입학전형에서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정한 장애종류 가운데 특정장애 종류에 대하여서만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부여한 것이 다른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이므로 특수교육대상자를 특별전형함에 있어서 특정 장애유형에 한정하여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관행의 시정을 권고

38) 국·공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원으로 미임용된 자에 대한 구제권고 (2003. 9. 25)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의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 위헌결정 당시 이미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국공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아 교원으로 미임용된 자들에 대하여 조속히 구제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권고

39) 사회적신분(비학생청소년)에 의한 차별 (2003.9.15. 03진차127 결정)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요금의 할인에서 학생과 학생이 아닌 청소년을 구별하는 것이 평등권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정 또는 개선을 권고

40) 학교내 장애인이동시설 미설치 (2003.5.21. 03진인26 결정)

학교내 '장애인 등'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미설치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권고 및 '장애인등'에게 편의시설이 완비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권고

41)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관한 개선 권고 (2003. 5. 12)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운영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27개 개발영역 가운데,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입(진)학 및 보건 영역은 입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원인사기록 중 별지목록 기재 항목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입력항목에서 제외되도록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사생활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에 대한 보안체계 강화 조치를 강구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

42) 초중고교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인권내용관련 직권 수정 권고 (2002. 10. 28)

교육부의 초중고교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개정 내용 중 학생들의 인권존중의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일부 부분에 대해 교육부장관에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 협의할 것을 권고

43)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의견 (2002. 9. 9)

학교생활규정은 실제 학교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관련법보다 더 크고, 학생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소지가 있으므로, 정부는 학교규율이 청소년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동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할 것을 권고

44) 나이를 이유로 한 대학신입생모집 과정의 차별 (2002. 5. 23. 02진차22)

대학의 입학시험에서 동점자 처리기준으로 연소자 우선원칙을 채택하여 연장자를 불합격처리한 것은 입학시험 지원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모집인원 유동제 등에 의한 합격처리 등의 구제조치를 이행하고 대학신입생 모집과 관련하여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적 제도, 정책, 관행 등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이를 시정·개선할 것을 권고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I. 학교생활규정(안) 전반에 대하여

1. 학교생활규정은 실제 학교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관련법보다 더 크고, 학생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소지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함.
2.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정부는 학교규율이 청소년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동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교사는 학생을 통제하기 위하여 체벌을 하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은 거의 대개가 체벌 때문에 생긴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적개심 등 부정적 감정을 버리지 못함. 체벌은 통제와 권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위험이 크므로 금지되어야 하며, 교육공동체는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는 처벌적 태도보다는 대화·협력·건설적 방향으로의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학교에서의 징계는 타 학생에 대한 제재효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해당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함.
 - 따라서, 체벌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을 개정하여 체벌금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바람.
 - 또한, 징계에 대한 규정은 선언적인 것으로 충분하며, 징계에 관한 내용은 학교실정을 고려하되 교사·학부모·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동 예시안에서 규정한 체벌조항은 삭제하여야 함.

4. 학생이 학교에 관련된 당사자로서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31조를 개정하여야 할 것임.
 - 교육기본법(제5조)은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제31조)에서는 학교운영위에서 교육주체의 한 축인 학생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비민주적이며, 이는 교육기본법 제5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동 예시안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회에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항은 교육기본법의 정신과 일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개정을 검토하여야 함.
5. 학교생활규정은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규정하여야 함.
6. 예시안의 ‘목적’에서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을 규정한다고 한 것과 달리 전반적 내용은 학생만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교사 및 학부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야 함.
7. 학교생활규정을 ‘…를 할 수 있다’, ‘…을 보장 받는다’는 등의 권리중심으로 만들어, 학생들이 존중되어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사실을 교육공동체(학생, 교사,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가 분명히 알게 하고, 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학생들은 학교에서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 교사와의 수직적 관계, 권리주의적 학습 분위기, 그들과 관계된 일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율성 부재 등 열악한 학습 환경에 처해 있음.
 - 교육기본법 제12조는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예시안에서처럼 학생을 단지 효과적으로 교육시켜야 할 피교육자로, 나아가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하기보다 권리의 주체로 대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8.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와 교사의 의무, 통합교육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임.

9. 각급 학교 및 도·농간 학교에 따라 생활규정을 달리 하여야 함에도 예시안의 규정이 거의 비슷함. 특히, 초등학교생활규정과 실업고등학교생활규정은 각 학교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임.

II 학교생활규정(안) 구체적 조항에 대하여

1. 학교생활규정의 목적

<예시안>

-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 학생들이 21세기 주역으로서 학교·지역사회·국가발전 및 범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함(§2)

<평가>

- 유엔아동권리협약(제29조)에서는 교육의 목적을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하게 하는데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제2조)은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함을 교육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예시안은 어린이·청소년의 이익과 생존·발달을 보장하기보다 사회질서유지에 목적이 있는 듯한 인상을 줌. 위의 법이념에 맞고 오늘의 학생인권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할 것임

2. 생활지도협의회

<예시안>

- 생활지도협의회는 본교 전 직원으로 구성(§4②)
- 생활지도협의회의는 직원조회 시 병행(§7)
- 구성은 교감, 생활지도부장...해당 학년부장(학부모대표:학교선택사항)으로 함(§8)

<평가>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하게 한 점과 동 예시안 제2조(목적) 규정에서 그 적용범위를 학생·학부모·교직원으로 하고 있는 점 및 학생의 생활지도는 학교·가정·사회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고려하여, 생활지도협의회에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인사의 참여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함.

3. 폭력예방 수립계획

<예시안>

- 생활지도협의회는 학교폭력 예방계획을 수립, 별도의 '학교폭력추방 위원회' 심의 후 실행(§9)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가해학생 치료·가해학생의 치료기관 지정

<평가>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나 부모의 의무로써 아동에 대한 폭행·폭언을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모범을 보이며, 다른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 알게 하고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문제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할 것임.
- 따라서 위 규정과 관련하여 교사·학부모·학생 모두에게 폭력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폭력예방 교육과정을 규정하여 인권의 보장과 인권침해를 예방, 치유할 수 있도록 학교내에 인권상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기 바람.

4. 여가활동

<예시안>

-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함(§18의1)
-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을 이용하며, 이용규칙 준수(§18의 2)
- 특별실 담당학생 두어 관리 및 청소(§18의3)
- 생활지도위원 등은 교내 비행발생 지역 수시순찰(§18의4)
- 타인의 휴식 방해하는 소란 활동 자제(§18의5)

<평가>

- 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휴식, 여가, 놀 권리 및 문화권을 규정하고 있음. 어린이는 놀이를 통해 심신과 정서를 성장·발달시키며, 사회성을 몸에 익히게 되는 것임.
- 법적 근거로는 헌법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등에서 찾을 수 있고, 아동복지법에서도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등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
- 아동의 발달 및 행복추구를 위하여 휴식, 여가, 놀 권리 및 문화권과 관련된 조항을 학교생활규정에 담아 학교생활이 즐겁고 보람 있는 삶의 현장이 되길 바람.
- 여가활동과 관련, 학교 측의 의무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의사표현의 자유를 구가하여 능력 배양의 기회가 되는 교지와 학교신문 발행 등에 대한 학교 및 교사의 지원을 명시하는 조항이 추가되어야 함.

5. 교내생활규정 중 용의사항

<예시안>

- 가방은 자유로운 것으로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19①5)
- 무스 등은 두발의 형태 변형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19①8)

<평가>

- ‘학생신분에 맞는’이라는 규정은 표현이 모호하고 그 판단을 학교당국이 독점하게 되는 것임. 또한, 두발상태 불량으로 적시한 무스·젤 등을 사용하여 ‘두발형태의 변형을 가지지 않은 범위 내’라는 규정은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를 넓힘으로써 자의적 벌점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 추구권은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 학교 당국이 학교 수업의 선행요건으로서 단정함을 요구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학생들 스스로 개성을 표현하면서도 학생 개개인의 생활양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용의사항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예시하여야 할 것임.

6. 교외생활규정 중 보호자의 의무

<예시안>

- 학생의 올바른 교외생활 지도, 심각한 이상발생 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중·고등예시안§31)
- 학부모·유관기관·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비행 방지토록 선도(초등예시안§45)

<평가>

- 학생을 잠재적 문제아 또는 비행아로 인식하는 경향이 보임. 따라서 ‘비행방지토록 선도’라는 규정보다는 ‘건강한 교외생활을 하도록 유도’라는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7. 초등학교예시안의 보호자 책임

<예시안>

- 학생의 교·내외생활로 타인이나 학교에 손해발생 시 보호자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 및 도의적 사죄(§49)

<평가>

- 동 규정은 민법 제755조에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는 규정임.
- 특히 법과 각종 규정은 윤리·도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을 최소한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항목을 추가하기보다 학생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양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도할 것을 규정함이 바람직함.

8. 정보통신

<예시안>

-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 말 사용, 타인의 인권 존중, 건전정보 제공, 음란·폭력을 접속 금지, 타인 정보보호, 지적 재산권 존중, 정해진 이용시간 준수 등(§31)

-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제한, 교내 첨단기자재 관리 철저(§32)

<평가>

- 사이버공간에서의 예절중시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은 필요한 규정이지만, 학생에게 알 권리 및 정보접근권과 표현의 자유 등을 어떻게 실현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규정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임.

9. 학생회

<예시안>

- 학생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음(§35)
- 학생회의 의결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 발생(§38)

<평가>

- 학생회회원 역시 학교운영의 책임 있는 한 주체이므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따라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할 수 없음'의 규정은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생회는 학생들의 자치기구다운 자율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보장이 교육의 일환이 되어야 하는 바,
- '(학생회의 의결사항은) 필요에 따라 자문 또는 지도를 구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10. 금지활동

<예시안>

- 학생회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단체 가입금지, 정치에 관한 활동 금지(§35)

<평가>

- 인간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안보, 공공질서와 도덕 등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제한되어서는 안됨. 또한, 학생인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는 것임.

- 정치란 효과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학생의 정치활동 제한은 기본권의 부당한 제한임과 동시에 학교가 하여야 할 중요한 교육을 방기하는 것임. 학생은 발달과정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에게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하고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민주적 방식을 제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아울러, 학교는 학생들에게 인권·평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단체 활동 참여를 장려하여야 함.
- 현행법에서 참정권은 만 20세 이상인 성인에게 있는 권리이고,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은 일단 정당원이 될 수 없음. 따라서 학교생활규정에 그런 제한 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선거연령을 낮추려는 사회적 분위기도 고려하여 동 규정은 삭제하여야 할 것임.

11. 효력정지

<예시안>

- 학생회 회칙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효력이 정지(§37)

<평가>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지난 1996년 한국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최초보고서를 심사하면서 "한국 정부가 명분으로 삼아 온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은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가로막아 왔다"고 지적한 바 있음.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함.

12. 학생체벌

<예시안>

- 교사의 감정에 치우친 체벌 금지, 체벌기준에 따라야 함
- 교사는 체벌 시 학생에게 사유 인지시켜야 함

- 체벌은 별도의 장소에서 반드시 제3자를 동반하여 실시
- 체벌 전 교사의 학생 건강상태 점검의무, 이상 있을 때 연기 가능
- 체벌 도구는 지름 1.5cm내외, 길이 60cm이하 나무, 직선형
- 체벌부위는 둔부, 여학생은 대퇴부로 제한
- 1회 체벌봉 사용 횟수는 10회 이내, 해당 학생에 상해 금지
- 해당 학생은 대체벌 요구 가능, 해당 교사는 학교장 허가 얻어 보호자 내교토록 하여 학생지도문제 협의(§54)

<평가>

-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징계) 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 7항은 “학교의 장은 …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란 체벌을 제한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교육상 필요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음. 법률상 체벌권은 학교교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에게 있는 것임.
- 대법원은 체벌을 형법상의 정당행위라는 관점에서, 정당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체벌의 목적·정도·방법·부위를 제시함. 정당한 목적은 훈육·수업진행·교육상 필요·훈계 등을 예를 들었고, 정당한 체벌 정도와 방법은 사회통념상 비난받지 않을 만큼의 객관성을 지닌 정도와 방법이라고 했으며, 정당한 체벌 부위는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지 않을 안전한 신체부위를 말한다고 정의함.
- 그러나, 법적 근거를 떠나서 체벌이 교육적으로 올바른 교육행위인지에 대한 치열한 찬반양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는 체벌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 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체벌적 태도보다는 대화·협력·건설적 방향으로의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학교에서의 징계는 타 학생에 대한 제재효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해당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식으로 주어져야 함.
- 교사는 학생을 통제하기 위하여 체벌을 하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은 거의 대

개가 체벌 때문에 생긴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적개심 등 부정적 감정을 버리지 못함. 체벌은 통제와 권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위험이 크므로 금지되어야 하며, 교육공동체는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따라서, 체벌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을 개정하여 체벌금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바람.
- 또한, 교육법에 대한 규정은 선언적인 것으로 충분하며, 교육법에 관한 내용은 학교실정을 고려하되 교사·학부모·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동 예시안에서 규정한 체벌조항은 삭제하여야 함.

13. 현장실습 준수사항

<예시안>

- 현장실습 중 기업체에 입힌 물적 손실에 대해서 보호자가 배상책임을 져야하고,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지도록 규정.(실업고예시안 §30)

<평가>

- 위 규정은 기업체와의 계약서 등에 규정해야 할 내용이며, 학교생활규정으로 적절한 것은 아니므로 삭제해야 할 것임. 학생에게 현장실습 중 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규정을 강조하기 이전에 교사 및 학교당국에게 현장실습대상에 대한 철저한 정보수집·분석을 할 것과 실습 중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함.
- 실업고등학교생활규정(안)이 중·고등학교생활규정(안)과 내용이 같고, 다만 위 조항만 달리 규정한 것은 실업교육이 주변부로 소외되어 있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방증임. 실업고등학교 교육현장에 알맞게 규정하여야 할 것임.
- 실업고 학생들은 고학력사회 노동경시의 풍조 속에 소외되는 경향이 많으며, 학교를 통해 생존·발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직업교육은 개인의 삶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며, 실업고등학교에서도 학생은 그에게 주어진 권리를 향유하면서 성장·발달해야 함.
- 특히 실업고에서는 교사와 학생과의 진지한 상담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여야 함.

- 또한, 정보화 사회에 발맞추어 실업과 실정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여 학생들의 교육동기를 일깨우고, 희망을 갖고 학습할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함.

14. 징계의 방법

<예시안>

-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함. (§82)

<평가>

- 징계의 방법으로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사회봉사하도록 명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자원봉사문화 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고,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부정적 선입관을 갖게 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징계의 방식은 징계대상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 공공생활에서의 소양 교육 등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

15. 개정방법

<예시안>

- 학생회 활동을 지도하기 위한 생활지도협의회의 심의 사항(§48)
 - 회칙제정 및 개정, 조직 및 편성, 예산·결산·감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학생회 회칙 개정은 대의원 또는 집행위원 발의, 생활지도협의회 심의 거쳐 대의원회에 회부(§49)
- 학교생활규정 개정은 교원 발의, 생활지도협의회에서 일정 수 교원 찬성으로 개정,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회의 심의를 얻어야 함(§92)

<평가>

- 학교생활규정 개정시 학생회의 심의를 얻도록 하였으나, 학생회 관련 규정에는 이 사항이 누락되는 등 비체계적임.
- 생활지도협의회는 지도기관이 되어 일상적인 지도·지원을 해야 하고, 학생회 활동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

회에 학생회 대표가 참여해야 할 것임.

-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시 특히 학생이 자신들에게 미칠 결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의견존중의 원칙을 충족시키고, 교사 및 학부모의 의견도 존중하여, 교육공동체의 합의에 의해 각 구성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각 학교현실에 적합하고 실현가능한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III. 교육부 예시안의 평가기준

○ 유엔아동권리협약

가. 내용

- (1)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아동권리협약은 전문, 제3부, 총 54개 조문으로 구성됨. 전문은 유엔현장, 세계인권 선언, 아동권리선언, 국제인권규약 등의 국제문서에서 표명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권 등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재확인하면서, 아동은 그들 국가와 부모 혹은 국제사회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 를 가진다고 선언
- (2) 제1부(제1조 내지 제42조)는 아동의 권리와 체약국의 아동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2부(제42조 내지 45조)는 협약의 국제적 실시조치로서 국가보고제도와 아동권리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부(제46조 내지 제54조)는 서명, 가입, 비준서 기탁, 개정절차, 유보, 폐기, 원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나. 평가원칙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①아동최선이익, ②생존·발달, ③차별금지, ④아동의견존중 원칙 및 각 권리보장 여부

- (1) 아동권리협약 제3조에서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그 활동이 어떤 기관에 의해 행해지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제1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규정. 이는 주로 아동의 이익과 부모들의 사생활의 이익 또는 국가당국의 편의 등과 충돌할 때 적용될 수 있음. 최선의 이익이 불확정개념이기는 하나, 권리보호와 복지 증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
- (2) 동 협약 제6조는 모든 아동은 생명권을 가지며, 당사국은 최대한 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할 것을 규정. 이것은 시민적·정

치적 권리의 성격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는 것임.

- (3) 동 협약 제2조에서 국가는 어떤 종류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하며,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 차별금지원칙을 선언함.
- (4) 동 협약 제12조에서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을 규정. 이는 아동의견 존중의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아동의 자기결정권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결정을 함에 있어 아동자신의 참여를 의미하는 것임.

○ 헌법의 어린이·청소년 권리관련 조항 및 기타 어린이·청소년관련법

2002. 9. 9

자료 3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주 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각 시·도 교육감에게,

1. 두발 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각급 학교에서의 두발제한과 단속이 교육의 목 적상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

1. 각급 학교의 두발제한과 관련된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시,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감독 기관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1. 두발 관련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 시 학생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1. 학생의 의사에 반한 강제이발은 인권침해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조치를 강구할 것을 각 권고한다.

이 유

I. 권고배경

1. 강제이발 실시를 비롯해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 두발에 대한 제한과 단속이 강화되면서 학생 두발자유와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관련 진정이 접수되었다.

2. 학생 두발제한 및 단속으로 인한 문제는 중·고등학교 일반의 관행과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교육인적자원부 및 각 시·도교육청에서 두발의 강제단속을 지양하고 민주적 합의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두발제한 규정을 정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뚜렷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따라서 두발과 관련한 학생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및 제25조에 따라 정책검토를 진행하였다.

II. 판단기준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하며, 이 때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의 말한다.

2. 따라서 두발제한으로 인한 학생의 인권침해 소지 여부를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2조 신체의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원칙, 교육기본법 제12조 교육과정에서의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 등의 국내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아동의 견해를 표시할 권리보장, 제16조 사생활 보호, 제27조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제28조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는 학교규율 등 국제인권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였다.

III. 판단

1. 현황

가.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두발길이와 모양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각 학교마다 그 제한기준도 일정하지 않다.

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료(2005. 6. 14. 두발관련 자료 및 의견)에 의하면 2005. 5. 11. 현재 전체학교의 92.56%와 91.10%에 해당하는 2,761개의 중학교와 1,924개의 고등학교가 학생의 두발을 제한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32개의 중학교와 44개의 고등학교에서 기계나 가

위로 학생의 두발을 자른 사례가 발생하였다.

지난 6월 위원회가 두 개의 피진정 고등학교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조사대상 65명 중 24명과 63명 중 42명이 두발을 강제로 잘렸거나 다른 학생이 잘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다. 이러한 결과는 두발 자율화 및 합리적 규제 등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별다른 개선 없이 두발제한이 획일적이고 타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 학생의 두발자유가 기본권인지 여부

가. 인간이 두발을 어떤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이므로, 두발자유를 기본적 권리의 내용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사생활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할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제27조는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고 있다.

나. 한편,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두발을 자르거나 변형시키는 것은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이익으로 하는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와 관계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학생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해당학생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격권에 대한 침해이다.

다. 우리 위원회는 두발 등 학생의 용모와 관련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에 대하여 2002년 9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은 자신이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학교당국이 학교 수업의 선행요건으로서 단정함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학생들 스스로 개성을 표현하면서도 학생 개개인의 생활양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3. 학생두발 제한의 한계

가. 두발자유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학생에게도 보장되어야만 함을 인정하더라도, 학교라는 자치공동